

월 · 간

재정포럼

Monthly Public Finance Forum



현안분석

- 담배가격의 국제비교와 세제개편방향
- 동남아의 부실채권 처리과정과 시사점

주요국의 조세제도

캐나다의 조세제도(Ⅱ)

정책흐름

2000년 상반기 통합재정수지 외

재정통계

소득세편(Ⅰ): 소득세 예산 및 징수 외

한국조세연구원 도서회원 가입안내

1. 회원에 대한 특전

- 1) 가입일로부터 1년간 본 연구원에서 발행하는 간행물(비판매용도서 포함. 단, 일부 용역보고서 등은 제외)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 2) 기발행된 간행물을 할인가격(정가의 40% 할인)으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3) 본원 도서실의 소장도서 및 통계자료를 열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4) 본원에서 개최하는 각종 세미나 및 심포지엄의 우선 초청대상이 됩니다.
- 5) 가입기간중에 회비가 오르더라도 추가부담이 없습니다.

2. 연간회비

- 1) KIPF 도서회원 가입비: 10만원
- 2) 『재정포럼』 구독료: 3만원
- 3) 도서회원 가입 및 『재정포럼』 구독: 12만원

3. 가입신청

회비는 다음 중 편리한 방법으로 납입하시면 됩니다.

- 1) 지로이용 : 본원 소정의 지로용지에 구독자의 주소와 이름을 기재하여 구독료와 함께 가까운 은행(농·수·축협 포함)에 납입하시면 됩니다. 은행에 비치된 지로용지를 이용하실 경우 지로번호(6923437)를 정확히 기재하여 주십시오.
- 2) 온라인 입금: 한빛은행 양재남지점
계좌번호: 441-05-000011
예금주: 한국조세연구원

❖ 도서회원 신청서를 Fax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안내문과 함께 지로용지를 보내드리겠습니다(전화신청도 가능합니다).

4. 문의처

우편번호: 138-160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79-6

한국조세연구원 출판과 도서회원 담당자

전화: (02)2186-2130~2 Fax: (02)2186-2139

인터넷 : <http://www.kipf.re.kr>

Kipf 한국조세연구원

The image shows a stack of application forms for KIPF membership. The forms are in Korean and include fields for personal information, address, and payment details. The top form is a membership application form, and the ones below are subscription cards for '재정포럼' (Fiscal Forum).

C · O · N · T · E · N · T · S

권두칼럼	2	한국 경제와 경제기반 구축 / 李秀範
현안분석	6 24	담배가격의 국제비교와 세제개편방향 / 成明宰 동남아의 부실채권 처리과정과 시사점 / 金珍洙
명언산책	50	새벽달빛 아래서 중
주요국의 조세제도	51	캐나다의 조세제도(Ⅱ) / 李章揆
경제단상	58 60	전환기의 경제흐름과 대응 / 이은직 신용카드가 생활화된 사회 / 閔丙秀
인물탐험	63	녹두장군 전봉준 / 李 濬
정책흐름	68 70 73 76 85	2000년 상반기 통합재정수지 신용카드 및 인터넷 등에 의한 국세전자납부 전면 실시 국세체납(결손)자료 신용정보기관 제공제도 시행효과 1999년도 기금운용 평가결과 2000년도 대형투자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결과
재정통계	90	소득세편(Ⅰ) : 소득세 예산 및 징수 외
이런 의견 저런 생각	97	내년도 세제개편안을 보고 외

한국 경제와 경제기반 구축

李 秀 範 / 백림조세연구원장 · 인하대학교 교수

IMF 쇼크를 맞은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기업·금융개혁이 급속도로 진행되었으나 이에 비해 공공개혁은 지지부진하다. 정부는 정부 자체의 공공개혁은 뒤로 미룬 채 공공부분의 일부분인 공기업만의 민영화 일정을 앞당기며 공공개혁에 박차를 가한다고 하고 있다. 어떠한 간에 중요한 것은 공공부분이 민간부분보다 앞장서서 개혁을 주도해야 한다는 점이다.

2000년 6월 22일부터 23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된 OECD 주최 공공개혁 심포지엄에서 샬리 쉘튼 콜비 OECD 사무차장은 공공개혁의 부진과 더불어 사회 부정부패의 척결을 공공개혁 내용 중 중요한 하나의 과제로 제기한 바도 있다.

사회의 부정부패란 모든 개혁의 걸림돌임에는 틀림이 없다. 우리나라의 사회적 부정부패는 결국 한국 경제를 IMF 체제로 유도한 결정적인 원인인 것이다. 정치 부정, 경제 부정, 사회적 부정, 문화분야 부정, 노동분야 부정 등의 기사가 매일 일간지를 채우고도 지면이 부족한 현실이다. 이 같은 부정은 결국 경제 주체들에 의하여 형성되고 있으며 경제 주체들에 의하여 감추어지고 있다. 이는 시장경제 주체들의 자제 없는 욕구(desire)가 가져온 현실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문화분야의 개혁



이 필요하다. 무한한 욕구의 주체인 경제 주체가 스스로 자제할 줄 아는 문화적 혁신이 필요한 것이다. 정치적 개혁도 인위적인 방법보다는 이 같은 환경적·문화적 가치를 바탕으로 조속히 개혁됨이 필요하다. 경제기반의 부실은 바로 한국 경제를 병들게 하는 원흉인 것이다. 경제적으로 전실히 성장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경제기반 구조

에 대한 개혁이 우선되어야 하고 이것에 지도층이 솔선수범하여야 한다.

첫째, 경제거래의 투명화이다. 정부는 물론 한국 재벌을 포함한 기업들 모두가 경제거래를 투명화하고 있지는 않다. 예를 들어 정부예산의 편성·심의·집행·감사 단계에 이르기까지 투명화가 완전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개인기업(특히 재벌기업)의 매출거래도 투명화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동대문, 남대문시장 그리고 용산전자상가 등은 말할 필요도 없다. 한국의 구조적 부패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모든 경제거래를 투명화시켜 거래의 정상화가 이루어지는 경제 기초질서를 확립하여야 한다.

경제 주체는 정부와 민간(개인·기업)이다. 정부는 대주체이고 민간은 수많은 소주체의 집합이다. 모든 경제 주체의 투명화 개혁 행태는 수많은 소경제주체보다 대주체인 정부가 솔선하여야 마땅하다. 그런데 경제 주체 중 국가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GNP의 30~60%를 거래하

정치 부정, 경제 부정, 사회적 부정, 문화분야 부정,

노동분야 부정 등의 기사가 매일 일간지를 채우고도 지면이 부족한 현실이다.

이 같은 부정은 결국 경제 주체들에 의하여 형성되고 있으며 경제 주체들에 의하여 감추어지고 있다.

이는 시장경제 주체들의 자제 없는 욕구가 가져온 현실이다.

는 거대경제 주체인 정부는 자신의 거래를 현실화·정상화하고 있지 않는 반면 99%를 구성하는 소 시장경제 주체들은 그들의 경제거래의 현실화·정상화를 강요당하고 있다.

정부의 예산거래가 투명화·정상화되지 않은 예는 여러 곳에서 찾아 볼 수가 있다. 세출집행에 있어 공직자 급여의 허위 내지 위장성 등의 문제, 세출 집행의 정치적 우선순위 결정 등 비효율성의 문제, 예산차명(借名) 과목의 상존문제, 기금 운영의 비효율성 문제 등 허다한 불투명·비효율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 세입에 있어서는 조세 부담의 대상이 되는 경제거래의 비현실화(매출 누락), 이에 따른 과세표준의 비현실화(과세의 불공평), 나아가 세율의 모순 등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모순을 담은 예산의 비신뢰성 문제 등은 일부 야당이 공적자금 손실이 110조원에 이른다고 주장한 것을 국민이 믿도록 하는 결과까지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일반정책도 투명화되어야 한다. 심지어는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생활기준도 신뢰성이 없다는 것이 문제다. 수사기관 수사비의 비현실성, 도로 표지판에 표시된 교통속도 표시의 비현실성 등도 비난의 대상이 되는 정부 정책의 비현실화 사례이다. 우리 주변에서 정부의 경제거래 등의 행태를 볼 때 너무나 비정상·비현실적인 것이 많다. 그러면서 국민들에게 어떻게 적법질서를 요구할 수 있는가. 바로 이 같은 정부의 비정상거래가 공공부문의 부패를 조성하고 국가경제를 위협하는 것이다.

경제거래의 비현실화·불투명화를 과세표준의 비현실화로 표현할 수도 있다. 경제거래의 불투명은 결국 일부 계층의 과세표준의 비현실화를 조장한다. 경제거래의 불투명화를 비호하는 경제정책은 바로 대기업의 비자금 조성의 산실을 보호하는 것이고 불법한 정치자금의 온상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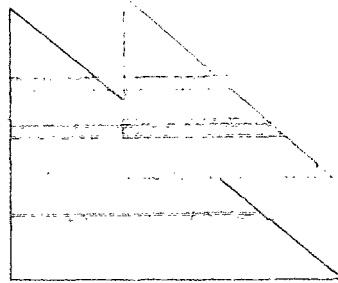
며 나아가 대기업의 외형누락을 비호하게 되어 대기업의 탈세를 초래하고 서민의 조세부담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경제기반을 구조적으로 파괴하게 된다. 이같이 경제기반을 파괴하는 구조를 빨리 바로 잡는 정책이 요청된다.

다음은 세율의 인하정책이다. 경제거래의 투명화로 확대되는 과세표준의 현실화는 많은 조세 징수를 가져오게 된다. 조세부담의 중립성(neutrality)의 원리에 비추어 볼 필요도 없이 과다한 세수는 시장원리를 해친다. 따라서 국가재정에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수준에서 세율을 조정하여야 하며 그럼으로써 시장경제 주체의 경제활동을 방해하는 요소를 제거하여야 한다. 초과부담(excess-burden)은 회피하여야 할 정책이기 때문이다.

끝으로 법 앞의 평등이다. 경제기반 구축 정책은 공평하여야 한다. 어떤 정치인은 정치자금의 성격을 띤 자금의 수수는 증여세를 납부한 예가 없다는 관례를 내세워 납세의무를 부정한다. 이것은 일반 납세자와 다른 법의 적용이다. 이와 같은 경제기반 구조는 나라 경제를 망치기에 충분하다.

산업자원부는 국내 조선업과 디스플레이 업종(TFT-LCD)의 1999년도 세계시장 점유율이 각각 1위(40.9%), 2위를 차지했으나 경쟁력은 일본의 85%와 60% 수준에 불과하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것은 위와 같이 경제거래의 기반이 구조적 모순을 가지고 있는 한 영원히 국제경쟁에는 낙오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모든 국민이 일상에서 하고 있는 경제거래에 대하여 누구에게나 똑 같은 처우를 하여 숨김없고 부끄러움 없는 경제기반 구축 정책을 이룩함이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가장 중요한 경제난제인 것이다. **김기**

현안분석



1. 담배가격의 국제비교와 세제개편방향

成明宰 연구위원

2. 동남아의 부실채권 처리과정과 시사점

金珍洙 연구위원

담배가격의 국제비교와 세제개편방향



成明宰 연구위원(sung@kipf.re.kr)

우리나라의 담배가격이
외국에 비해 상당히
낮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담배소비세율 인상을 통한
담배가격 인상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제기되고 있다.

1. 서론

최근 국내에서도 흡연의 유해성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이 고조되면서 담배 소비억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각종 사회운동을 통해 금연운동이 전개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담배가격이 외국에 비해 상당히 낮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담배소비세율 인상을 통한 담배가격 인상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경제위기 이후 재정적자가 크게 확대되어 경제성장 및 재분배정책 시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담배소비세제 개편을 통한 증세방안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왜냐하면 가능한 한 경기에 부담이 적으면서도 증세에 따른 왜곡 현상이 작은 세목을 증세의 최우선 고려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그 밖에 담배소비세제의 개편이 필요한 이유로는 종량세 과세체제를 유지할 경우 대부분의 외국에서는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종량세액을 수시로 또는 정기적으로 조정해주는 데 반해 우리나라에서는 1994년에 한 차례 담배소비세율을 조정하고, 1996년 중반부터 교육세가 새로이 과세되기 시작한 것을 제외하고는 세액의 조정이 없어 담배에 대한 실효소비세율이 하락하고 있다. 따라서 담배에 대한 소비세 과세의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도 세율개편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흡연과 건강은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담배 관련 세제개편을 통

• 이 원고는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한국조세연구원의 공식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한 세수 증가분의 일부를 부족한 의료재정에 연계시켜 사용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이로써 담배 과세 강화를 통해 국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빈약한 의료재정 확충을 통해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확충할 수 있을 것이다.

담배 과세 강화를 통해
국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빈약한
의료재정 확충을 통해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확충할 수 있을 것이다.

II. 담배가격 및 담배소비의 국제비교

1. 담배가격의 국제비교

우리나라, EU, 미국, 일본을 대상으로 담배가격을 비교해본 결과 절대가격 수준이 가장 높은 국가는 영국으로 쉐런 20개비 1갑당 4.17파운드(약 7,340원) 정

〈표 1〉 쉐런가격의 국제비교(2000년 4월 1일 현재)

(단위: 각국 화폐단위/갑, %)

	소매가격	상대가격	부가세·판매세	종가세	종량세	총세부담	세부담률
영국	4.17	6.73	0.62	0.92	1.81	3.35	80.3
아일랜드	2.81	4.53	0.49	0.52	1.23	2.24	79.8
덴마크	2.50	4.03	0.50	0.53	0.98	2.01	80.4
스웨덴	2.50	4.03	0.50	0.98	0.29	1.77	70.8
핀란드	2.27	3.66	0.41	1.14	0.18	1.73	76.0
프랑스	1.92	3.10	0.34	1.05	0.07	1.46	76.0
벨기에	1.69	2.73	0.29	0.80	0.15	1.25	73.9
독일	1.73	2.79	0.24	0.38	0.57	1.18	68.5
오스트리아	1.53	2.47	0.25	0.64	0.21	1.11	72.7
네덜란드	1.51	2.44	0.23	0.32	0.54	1.09	71.9
이탈리아	1.24	2.00	0.21	0.67	0.05	0.93	74.7
그리스	1.25	2.02	0.19	0.68	0.04	0.91	72.5
룩셈부르크	1.25	2.02	0.13	0.61	0.10	0.84	67.5
포르투갈	1.05	1.69	0.15	0.34	0.35	0.83	79.7
스페인	1.01	1.63	0.14	0.55	0.04	0.72	71.4
일본	1.53(250)	2.47	0.07(11.9)	0	0.87(141.44)	0.94(153.34)	61.3
미국	1.98(2.926)	3.20	0.09(0.138)	0	0.44(0.646)	0.53(0.784)	26.8
한국	0.62(1100)	1	0.06(100)	0	0.37(644)	0.42(744)	67.6

주: 1. () 안은 각국 화폐단위임.

2. 미국은 1999년 기준임.

3. 환율: 1달러=1190.67원(1999년 평균), 영국 1파운드=1760.84원, 일본 100엔=1077.10원(이상 2000년 4월 1일 현재).

자료: 영국 담배협회(TMA), 일본 JT, 미국 Orzechowsky and Walker.

우리나라, EU, 미국,
일본을 대상으로
담배가격을 비교해본 결과
절대가격 수준이 가장
높은 국가는 영국으로
켈런 20개비 1갑당
4.17파운드(약 7,340원)
정도이며, 가장 가격이
싼 국가는 우리나라로
0.62파운드(1,100원)이다.

〈표 2〉 EU에서 가장 소비비중이 높은 담배제품의 국가별 소비자가격 및 세부담

(단위: 각국 화폐단위, 유로, %)

	소비자가격		총조세		소비자가격	각국화폐/
	1000개비당 각국화폐	1000개비당 유로화	1000개비당 세부담(유로화)	소비자가격 대비 세부담률	대비 유통마진을	유로화 환율
오스트리아	1,750	127.18	92.49	72.7	12.4	13.7603
벨기에	5,680	140.80	104.04	73.9	7.5	40.3399
덴마크	1,550	208.13	167.27	80.4	5.7	7.44730
핀란드	1,125	189.21	143.86	76.0	12.0	5.94573
프랑스	1,050	160.07	121.64	76.0	8.0	6.55957
독일	281.58	143.97	98.61	68.5	11.5	1.95583
그리스	35,000	104.56	75.80	72.5	10.9	334.730
아일랜드	184.50	234.27	187.00	79.8	6.7	0.78756
이탈리아	200,000	103.29	77.12	74.7	10.0	1936.27
룩셈부르크	4,200	104.12	70.25	67.5	11.0	40.3399
네덜란드	278	126.15	90.70	71.9	9.0	2.20371
포르투갈	17,500	87.29	69.55	79.7	8.2	200.482
스페인	14,000	84.14	60.05	71.4	8.5	166.386
스웨덴	1,725	208.59	147.67	70.8	14.2	8.27000
영국	208.5	346.81	278.37	80.3	6.0	0.60120

주: 1유로=0.9625달러.

자료: EU.

도이며, 가장 가격이 싼 국가는 우리나라로 0.62파운드(1,100원)이다. 우리나라를 제외한 비교대상 17개국 가운데 우리나라의 담배가격과 비교하여 담배가격이 2배 이하인 국가는 포르투갈과 스페인의 2개국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모두 최소한 우리의 2배 이상이다.

EU 및 미국, 일본의 담배가격이 우리나라보다 크게 높은 것은 주로 담배에 대한 총소비세 부담, 즉 절대세액 및 소비자가격 대비 세부담률이 우리보다 매우 높기 때문이다. 특히 영국, 아일랜드, 덴마크, 포르투갈 등은 총세부담률이 무려 소비자가격의 80% 정도에 이르는 등 매우 높다.

2. 담배소비의 국제비교

15세 이상 인구 1인당 연간 흡연량(켈런)은 그리스가 3,508개비(약 175갑)이고 그 다음으로 일본, 우리나라, 스페인이 약 3천여 개비(약 150갑)로 소비 수준

이 높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1인당 흡연량이 세계적으로 최고 수준에 도달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말아 피는 담배(hand rolling tobacco) 등의 소비가 거의 전무한 반면 외국에서는 말아 피는 담배의 소비 비중도 상당히 높다. 따라서 결련 뿐만 아니라 말아 피는 담배까지 고려한다면 외국의 담배소비 수준이 다소 상승한다.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나라의 흡연 수준이 세계 최고 수준에 근접해 있음에는 별 차이가 없다.

15세 이상 인구 1인당
연간 흡연량(결련은
그리스가 3,508개비
(약 175갑)이고
그 다음으로 일본,
우리나라, 스페인이
약 3천여 개비(약 150갑)로
소비 수준이 높다.

〈표 3〉 담배 생산·소비 및 흡연인구(1998년 현재)

(단위: 백만개비, 톤, 인, 개비, 백만인)

	생산량				담배 관련 산업 고용	결련 소비량			흡연자 수
	결련	시가	파이프 담배	말아 피는 담배		총계	15세 이상 인구	1인당 소비량	
오스트리아	22,512	22			17,000	15,052	2,253	1,844	1.83
벨기에/ 룩셈부르크	12,300	45	558	10,200	24,500	17,303	1,989	1,632	2.6
덴마크	12,276	335	2,772	1,486	6,000	8,238	2,266	1,570	1.5
핀란드	5,510	41	5	994	450	4,813	1,153	936	0.8
프랑스	43,304	695	1,000	2,775	143,000	83,800	1,744	1,431	14
독일	181,903	1,882	638	28,462	150,000	138,388	2,001	1,684	19.9
그리스	35,800	-	19.3	-	425,000	30,600	3,508	2,908	3.8
아일랜드	6,000	60	-	3,507	5,000	6,400	2,274	1,798	0.8
이탈리아	50,681	96.4	135	-	307,000	91,100	1,898	1,592	14.1
네덜란드	116,263	2,015	350	29,000	25,000	16,623	1,624	1,061	4.6
포르투갈	14,954	-	-	-	-	16,339	1,940	1,667	1.4
스페인	74,110	764	11.6	72	90,000	91,002	2,813	2,291	11.1
스웨덴	5,700	-	122	922	14,900	5,740	1,034	649	1.2
영국	163,547	823	1,159	6,673	136,000	70,000 ^a	1,525	1,203	15
EU 계	744,860	6,781	6,770	84,091	1,343,850	595,398	1,969	1,594	92.63
미국 ^b	n.a.	n.a.	n.a.	n.a.	n.a.	432,758	2,130	1,593	n.a.
일본 ^b	n.a.	n.a.	n.a.	n.a.	n.a.	332,200	3,116	2,644	33.59
한국	n.a.	n.a.	n.a.	n.a.	n.a.	105,826	2,959	2,258	n.a.

주: 1) 미국과 일본은 1999년 기준.

2) 영국의 세금을 납부한 결련 소비량은 78,700백만 개비로 추정됨.

자료: 영국 담배협회(TMA), 일본 JT, 미국 Orzechowsky and Walker.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 1998.

현재의 담배소비세는
1988년에 체결된
한·미 통상협상의
결과로써 1989년에
도입되었다.

III. 담배 관련 세제의 국제비교

1. 한국

1980년대 중반, 3저 호황에 따라 국제경제가 호황을 맞이하면서 선진국을 중심으로 자유무역에 대한 대외통상압력이 가중되었다. 당시 우리나라에서는 담배에 대한 국가전매체제가 붕괴되었으며 종전에 전매익금체제로 운용되던 담배 관련 세제가 1985년에 담배판매세, 1989년에는 담배소비세로 개편되고, 담배수입이 전면 개방되는 큰 변혁기를 맞이하였다.

현재의 담배소비세는 1988년에 체결된 한·미 통상협상의 결과로써 1989년에 도입되었다. 담배소비세는 도입 당시 한·미 담배양해각서에서 합의한 바에 따라 켈런 20개비 1갑을 기준으로 종량세의 형태로서 360원의 담배소비세를 과세하였다. 그리고 담배소비세 이외에는 여타의 어떠한 조세도 과세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특히 국내 담배제조시장이 대외적으로 개방되기 전에는 완제품 수입에 대해서도 관세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다.

1994년부터는 미국 측이 양해함에 따라 담배소비세의 세율이 1갑당 460원으로 인상되었으며, 1995년에는 한미 담배양해록에 대한 재협상 결과에 따라

〈표 4〉 우리나라 담배소비세의 과세대상, 과세표준 및 세율

(단위: 원)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1993	1994~
흡연용 제조담배	켈런	판매가격 200원 초과	20개비당	360	460
		판매가격 100~200원		40	40
		판매가격 100원 이하		0	0
	파이프 담배		50그램당	700	910
	엽켈런			2,000	2,600
	각련	판매가격 100원 초과		700	910
		판매가격 100원 이하		0	0
씹는 담배			800	1,040	
냄새 맡는 담배			500	650	

주: 1. 1996년 7월 1일부터 담배소비세액의 40%만큼 교육세가 부과되고 있음.

2. 1999년 1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고 있음.

1996년 7월 1일부터 교육세(담배소비세액의 40%, 184원/갑), 1999년 1월 1일부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있다.

2. 일본

일본의 담배소비세는 국세와 지방세의 이원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1,000개비당 6,252엔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담배소비세의 세수는 1999년 4월까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50 대 50으로 세원을 배분하였으나, 1998년 말에 도입된 담

일본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와 달리 담배소비세 이외에도 도입 초기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었고 1998년 12월부터 기존의 담배소비세에 추가하여 국세로서 1,000개비당 세율 820엔의 담배특별세를 신설하였다.

〈표 5〉 일본의 담배 관련 소비세

(단위: 엔/천개비, 엔/20개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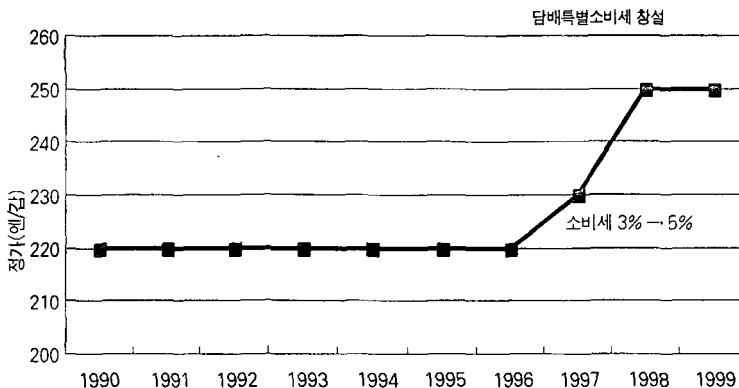
	국내담배세 (국세분)	담배특별세	지방담배세	
			도부현세	시정촌세
1997년 4월 ~	3,126 (62.52)	-	692 (13.84)	2,434 (48.68)
1998년 12월 ~	3,126 (62.52)	820 (16.4)	692 (13.84)	2,434 (48.68)
1999년 5월 ~	2,716 (54.32)	820 (16.4)	692 (13.84)	2,668 (53.36)

주: 1. () 안은 20개비당 세율임.

2. 1997년 4월 소비세율 인상(3%→5%) 후 도부현세가 시정촌세로 일부 세원이 이양됨.

자료: JT.

〔그림 1〕 일본의 마일드 세븐 가격변화 추이



미국의 담배소비세는
연방담배소비세와
주별로 세율이 차등화된
주담배소비세로
구성되어 있다.

배특별세(국세)로 인해 지방정부(특히 시정촌)의 몫이 다소 증대되었다. 일본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와 달리 담배소비세 이외에도 도입 초기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었다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일본에서는 1998년 12월부터 기존의 담배소비세에 추가하여 국세로서 1,000개비당 세율 820엔의 담배특별세를 신설하였다¹⁾.

1990년대 후반에는 소비세율 및 담배 관련 개별소비세의 세율 인상(세목 신설)에 따라 담배가격이 두 차례 인상되었다. 소비세율이 인상됨에 따라 종전에 220엔 하던 마일드 세븐 1갑의 소비자가격이 230엔으로 10엔 인상되었으며, 담배특별세가 도입되면서 다시 250엔으로 인상되었다²⁾.

3. 미국

미국의 담배소비세는 연방담배소비세와 주별로 세율이 차등화된 주담배소비세로 구성되어 있다. 연방담배소비세의 세율은 킬로그램 20개비 1갑당 24센트로 모든 주에서 동일하게 적용된다. 주담배소비세의 세율은 주에 따라 상이한데, 담배 1갑당 최저 2.5센트(버지니아주)에서 최고 1달러(알래스카주)에 이른다.

일반적으로 앞담배 경작지나 담배제조사가 소재한 주에서는 담배소비세율이 낮은 경향을 보인다.

4. EU

EU에서 담배에 대한 조세 조화(tax harmonization)는 1971년부터 시작되었으며 현재 EU 회원국간에는 담배소비세의 과세체계가 일원화되어 있다. 그러나 과세체계의 일원화가 반드시 회원국간 세율의 일치를 의미하지는 않기 때문에 각 국별로 세율 수준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EU 각국의 담배소비세는 종가세와 종량세의 혼합세 체계로 되어 있다. 조세 조화에 따라 각 회원국은 담배소비세의 총부담액이 소비자가격 대비 최소 57% 이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담배소비세 종량세 부분의 세율은 담배소비세 총부담액과 부가가치세액을 합산한 금액의 5~55% 범위 사이에 있어야 한다. 담배소비세의 세율을 결정하는 데 있어 기준이 되는 가격은 가장 소비비중이

1) 담배특별세의 도입은 기존 담배소비세로 환산할 경우 13.1%의 세율 인상에 해당된다.

2) 일본 회사 관계자의 설명에 따르면, 담배 관련 세제의 개편 없이 담배 가격을 인상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고 한다.

〈표 6〉 미국의 주담배소비세율(결련)

(단위: 센트/갑)

	1985	1990	1995	1996	1997	1998	1999 ²⁾
AL	16	16.5	16.5	16.5	16.5	16.5	16.5
AK	8	16	29	29	29	29	100
AZ	13	15	18	58 ³⁾	58	58	58
AR	21	21	31.5	31.5	31.5	31.5	31.5
CA	10	35	37 ³⁾	37	37	37	87
CO	15 ¹⁾	20	20	20	20	20	20
CT	26 ¹⁾	40	47	50	50	50	50
DE	14	14	24	24	24	24	24
DC	13	17	65	65	65	65	65
FL	21	24	33.9	33.9	33.9	33.9	33.9
GA	12	12	12	12	12	12	12
HI	23 ³⁾	33	60	60	60	80	100
ID	9.1	18	18	28	28	28	28
IL	12	20	44 ³⁾	44	44	44	58
IN	10.5	15.5	15.5	15.5	15.5	15.5	15.5
IA	18	31	36	36	36	36	36
KS	16	24	24	24	24	24	24
KY	3	3	3	3	3	3	3
LA	11	16	20	20	20	20	20
ME	20 ¹⁾	28	37	37	37	37	74
MD	13	13	36	36	36	36	36
MA	26 ¹⁾	26	51	51	51	76 ¹⁾	76
MI	21	25	75 ¹⁾	75	75	75	75
MN	18	38	48	48	48	48	48
MS	11	18	18	18	18	18	18
MO	13	13	17 ¹⁾	17	17	17	17
MT	16	16	18 ¹⁾	18	18	18	18
NE	18	27	34	34	34	34	34
NV	15	20	35	35	35	35	35
NH	17 ¹⁾	17	25	25	25	25	37
NJ	25	27	40	40	40	40	80
NM	12	15	21	21	21	21	21
NY	21	33	56	56	56	56	56
NC	2	2	5	5	5	5	5
ND	18	27	44	44	44	44	44
H	14	18	24	24	24	24	24
OK	18	23	23	23	23	23	23
OR	19	27	38	38	38	68 ¹⁾	68
PA	18	18	31	31	31	31	31
RI	23	27	56	56	61	71	71
SC	7	7	7	7	7	7	7
SD	15	23	23	23	33	33	33
TN	13	13	13	13	13	13	13
TX	18.5	26	41	41	41	41	41
UT	12	23	26.5	26.5	26.5	26.5	51.5
VT	17 ¹⁾	17	20	20	44	44	44
VA	2.5	2.5	2.5	2.5	2.5	2.5	2.5
WA	23	34	56.5	56.5	81.5	82.5	82.5
WV	17	17	17	17	17	17	17
WI	25	30	38	38	44	44	59
WY	8	8	12	12	12	12	12

주: 1) 회계연도 개시일 당시의 세율임.

2) 1999년은 2000년 1월 1일 기준 세율임.

3) 하와이주의 세율은 1993년 7월 1일까지 도매가격의 40%, 뉴햄프셔주의 세율은 1975년 7월 1일까지 소매가격의 42%였음.

자료: Orzechowsky & Walker.

EU 회원국간

과세체계의 일원화가

반드시 회원국간 세율의

일치를 의미하지는

않기 때문에 각국별로

세율 수준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대체로 <표 7> 미국의 소비자가격 대비 궤련의 세부담 비중(1999년 11월 1일 현재)

국내 담배제조회사의

(단위: 센트, %)

독점력 또는 시장

장악력이 클수록

종가세 부분을 높게

책정하는 경향이 있으며,

반대로 수입담배의

경쟁력이 강할수록

종량세 부분의 세율비중이

높은 경향을 나타낸다.

	평균소비자가격	주담배세	주판매세	연방세세금	1갑당 총세금
AL	270.6	16.5	11.0	24.0	51.5
AK	404.7	100.0	0.0	24.0	124.0
AZ	217.7	58.0	16.0	24.0	98.0
AR	279.3	31.5	13.0	24.0	68.5
CA	351.3	87.0	25.0	24.0	136.0
CO	281.3	20.0	0.0	24.0	44.0
CT	312.3	50.0	19.0	24.0	93.0
DE	276.2	24.0	0.0	24.0	48.0
DC	324.0	65.0	19.0	24.0	108.0
FL	286.3	33.9	17.0	24.0	74.9
GA	257.4	12.0	8.0	24.0	44.0
HI	373.3	100.0	15.0	24.0	139.0
ID	275.9	28.0	14.0	24.0	66.0
IL	312.7	58.0	20.0	24.0	102.0
IN	260.2	15.5	13.0	24.0	52.5
IA	286.3	36.0	14.0	24.0	74.0
KS	271.2	24.0	13.0	24.0	61.0
KY	243.4	3.0	15.0	24.0	42.0
LA	281.2	20.0	11.0	24.0	55.0
ME	330.5	74.0	18.0	24.0	116.0
MD	315.2	66.0	16.0	24.0	106.0
MA	352.3	76.0	18.0	24.0	118.0
MI	333.8	75.0	20.0	24.0	119.0
MN	303.6	48.0	19.0	24.0	91.0
MS	272.0	18.0	19.0	24.0	61.0
MO	258.8	17.0	11.0	24.0	52.0
MT	260.7	18.0	0.0	24.0	42.0
NE	288.3	34.0	13.0	24.0	71.0
NV	303.5	35.0	20.0	24.0	79.0
NH	313.9	52.0	0.0	24.0	76.0
NJ	339.7	80.0	17.0	24.0	121.0
NM	279.8	21.0	14.0	24.0	59.0
NY	326.8	56.0	13.0	24.0	93.0
NC	257.3	5.0	10.0	24.0	39.0
ND	297.5	44.0	18.0	24.0	86.0
H	265.4	24.0	13.0	24.0	61.0
OK	272.6	23.0	12.0	24.0	59.0
OR	324.2	68.0	0.0	24.0	92.0
PA	280.1	31.0	17.0	24.0	72.0
RI	322.9	71.0	23.0	24.0	118.0
SC	255.3	7.0	13.0	24.0	44.0
SD	272.9	33.0	11.0	24.0	68.0
TN	261.2	13.0	21.0	24.0	58.0
TX	292.3	41.0	18.0	24.0	83.0
UT	312.9	51.5	15.0	24.0	90.5
VT	301.1	44.0	15.0	24.0	83.0
VA	252.8	2.5	11.0	24.0	37.5
WA	359.8	82.5	23.0	24.0	129.5
WV	253.7	17.0	15.0	24.0	56.0
WI	312.8	59.0	16.0	24.0	99.0
WY	267.1	12.0	11.0	24.0	47.0
평균	292.6	64.6	13.8	24.0	78.4

높은 담배제품의 가격이다.

대체로 국내 담배제조회사의 독점력 또는 시장 장악력이 클수록 종가세 부분을 높게 책정하는 경향이 있으며, 반대로 수입담배의 경쟁력이 강할수록 종량세 부분의 세율비중이 높은 경향을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종가세 부분의 비중이 클수록 원가상승에 따른 소비자가격 상승률이 높아지는 반면에 종량세 부분의 비중이 커질수록 소비자가격 상승률이 낮아진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내기업의 가격경쟁력이 크지 않거나 외국산 수입담배와의 경쟁이 치열한 경우에는 종가세 비중을 낮춤으로써 지나친 가격경쟁에 따른 국내산업의 피해를 완화하고 있는 반면, 국내시장에서 국내기업이 독점적 지위를 행사하면서 가격전략에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경우에는 종가세 부분의 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을 관찰할 수 있다. 즉, 종가세 비율이 높을수록 승수가 커져 원가 경쟁이 격화되므로 경쟁이 심한 국가일수록 종가세 비율을 낮추는 경향이 있다.

일례로 담배제조회사가 독점되어 있는 프랑스(Altadis)의 경우 종가세 부분의

1999년에는

세수 여건이 호전되었으나
경제위기 동안 크게
피해를 입은 중산층 및
서민층의 보호·지원을
위해 세수초과분의
상당 부분을 사용하게
됨에 따라 재정적자
축소 및 정부에서 전망한
2004년의 균형재정
회복이 용이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표 8〉 EU의 담배 관련 소비세 세율(2000년 4월 1일 현재)

(단위: %, 각국 화폐단위)

	적용시기	부가가치세		담배소비세		
		명목세율	소비자가격 대비 세율	소비자가격 대비 종가세율	1000개비당 종량세율	1000개비당 최소 세액
오스트리아	1997.01.01~	20.00	16.67	42.00	246.00	825
벨기에	1998.07.01~	21.00	17.36	47.36	521.00	3614
덴마크	1992.01.01~	25.00	20.00	21.22	606.80	-
핀란드	1996.01.01~	22.00	18.03	50.00	90.00	587.25
프랑스	2000.01.03~	20.60	17.69	54.50	39.90	530 ¹⁾
독일	1998.06.01~	16.00	13.79	21.96	92.20	470 ²⁾
그리스	1999.01.01~	18.00	15.25	53.86	1182.0	137
아일랜드	1999.12.02~	21.00	17.36	18.57	80.99	-
이탈리아	1999.01.01~	20.00	16.67	54.27	7467.0	-
룩셈부르크	1998.07.01~	12.00	10.71	48.57	344.00	-
네덜란드	1999.09.01~	17.50	14.89	21.05	99.95	-
포르투갈	1999.05.27~	17.00	14.53	32.00	5800.0	-
스페인	1997.01.01~	16.00	13.79	54.00	500.0	-
스웨덴	1998.08.01~	25.00	20.00	39.20	200.0	-
영국	2000.03.22~	17.50	14.89	22.00	90.43	-

주: 1) for Blondes 2) for Black
자료: EU.

대외자산 축적이
많이 되어 있는
일본의 경우보다
우리의 경제 여건이
열악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장기적·지속적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재정적자 축소 및
균형재정 회복,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누적적자
축소가 반드시 필요하다.

서울이 소비자가격 대비 54%에 이르는 등 증가세의 비율이 매우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반면에 담배소비 억제를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거나 지나친 가격 경쟁을 방지하고자 하는 영국에서는 종량세 부분의 비중이 매우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것을 볼 때 국내 산업 보호 측면과 잠재적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내 담배소비세의 과세체계 및 세율수준 개편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IV. 담배 관련 세제개편의 필요성

1. 환경의 변화

가. 재정 여건의 변화

1997년 말 우리 경제는 건국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이하였다. 한보·기아 문제가 발생한 이후 급격히 자본이 해외로 유출되면서 환율이 급등하고 실물경제가 급속히 침체되면서 1998년에는 경제성장률이 -5.8%를 기록하였다.

경기 급락에 따라 세수가 크게 감소한 반면 기업 및 금융 구조조정과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막대한 재정지출 수요가 발생하여 단기간에 재정적자가 GDP의 4~5%에 이르는 상황에 도달하였다. 이후 재정적자는 계속 누적되어 현재 국가채무가 최소 100조원이 넘는 규모에 달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재정적자 확대를 억제하기 위해 석유류 및 사치품에 대한 특별소비세와 교통세의 세율을 인상하고 금융소득종합과세를 무기한 유보하면서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인상하였다. 그 결과 최소 수조원의 세수 증대가 발생하였으나 재정적자 보전에는 크게 미흡하였다.

1999년에는 예상보다 경기가 빨리 회복되면서 세수 여건이 호전되었으나 경제위기 동안 크게 피해를 입은 중산층 및 서민층의 보호·지원을 위해 세수초과분의 상당 부분을 사용하게 됨에 따라 재정적자 보전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세입의 규모가 줄어드는 측면이 있다.

일본을 비롯한 많은 선진국의 예에서 보듯이 재정적자가 크게 확대되면 재정지출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경제회복을 위한 재정

지출 확대가 어려워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외자산 축적이 많이 되어 있는 일본의 경우보다 우리의 경제 여건이 열악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장기적·지속적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재정적자 축소 및 균형재정 회복,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누적적자 축소가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1997년 말과 같은 외부적인 충격이 다시 발생하는 경우에는 누적재정적자로 인해 돌이키기 어려울 정도로 경제가 몰락할 가능성이 더욱 커지는 만큼 이에 대비한다는 차원에서도 재정적자의 축소는 반드시 필요하다.

경기 호황을 통한 세수탄력성 회복만으로는 이러한 것을 달성하기 어려우므로 증세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경제위기 동안 재정적자 확대에 따른 세수 보전을 위한 방안으로 이자·배당소득세, 석유류, 주류, 담배 관련 소비세에 대한 증세방안 검토가 있었다. 이 가운데 이자·배당소득세와 석유류 관련 소비세의 세율 인상 조치가 취해졌으며, WTO 주세분쟁 종료 후 1999년 말에 소주세율 인상을 골자로 하는 주세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담배 관련 소비세의 경우에도 증세대상으로 고려되었으나, 세계개편이 관련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와 공사의 민영화 문제, 세부담이 형평성에 미치는 영향, 거시경제적 파급효과 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신중한 대처가 필요하여 제외되었다.

나.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재정 확충의 필요성

전국민 의료보험이 실시되었지만 우리나라의 의료서비스는 아직 후진적인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민개보험을 통해 전국민 의료보험이 실시되기는 하였지만, 감기 등과 같이 비용 부담이 매우 작아 보험 혜택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소액 질병의 경우에는 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반면에 정작 의료보험 혜택이 필요한 중대 질병이나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은 문제는 우리 국민들이 사소한 질병에도 지나치게 의료기관을 자주 찾는다는 데에 원인이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의료 재정이 빈약하다는 데에서 그 근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이 외에도 의약분업 실시로 인한 재정부담 중대 및 인구 노령화에 따른 정부의 의료비 부담 증가가 예상되고, 의료재정 확충을 통한 저소득층 지원이 소득분배 측면에서 매우 효과가 크다는 합리성으로 인해 의료재정 확충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여건 속에서 추가적인 세원 발굴이 적극적으로 고려되고 있으며, 이를 위

감기 등과 같이
비용 부담이 매우 작아
보험 혜택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소액 질병의
경우에는 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반면에
정작 의료보험 혜택이
필요한 중대 질병이나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경제위기 이후
유독 담배에 대한
소비지출은 별로
감소하지 않아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의 세부담이 더욱
과중해져 세부담의
역진성이 매우
심각해졌는데,
담배소비세 과세체계가
종량세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이 있다.

해 담배관련 세수를 연계시키게 되면 재정 확충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물론 담배소비 억제를 통한 국민건강 증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즉 인체에 유해한 담배 관련 세제를 의료재정 확충과 일부 연계시켜 운용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사료된다.

2. 담배 관련 세제 개편의 필요성

경제위기 이후 재정적자가 크게 확대되어 경제 성장 및 재분배정책 시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재정적자 축소를 통한 균형 재정 회복이 현안이지만 생산적 복지 지출 확대, 국제수지 악화 등으로 인해 석유류 및 담배 관련 소비세의 증세 또한 불가피한 상황이다.

균형 재정 회복을 위해 증세가 필요한 이유는, 첫째, 경기 회복에 따라 자연스럽게 세수가 확대되는 데 한계가 있으며, 둘째, 최근 대통령이 밝혔듯이 1999년도 세수초과분(3조 5천억원)을 생산적 복지 지출에 사용하는 등, 추가적인 재원도 재정적자 축소에 사용하기에는 역부족이고, 셋째, 최근 악화되고 있는 국제수지는 인플레이션 및 재정적자의 확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넷째, 복지사회 구현과 의약분업 실시에 따라 재정수요가 추가됨에 따라 재정 확충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근의 경제·사회적 여건변화에 비추어 볼 때 새로운 세원 발굴이 필요하다.

재정적자 축소 또는 균형 재정 회복이 필요한 이유는, 첫째, 재정적자 축소 실패시에는 또 한 차례의 외환위기 및 경제파국의 상황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며, 둘째, 1990년대에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 경제가 고도성장기를 맞이하였지만 일본의 경우에는 성장을 멈추고 장기간 정체국면에 있는데, 이는 누적 재정적자 규모가 매우 크기 때문에 경제정책 수행에 제약요인이 되어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보다 경제구조가 취약한 우리나라의 경우 재정적자가 더욱 확대된다면 일본보다 더 치명적인 결과가 초래될 것이다.

셋째, 재정적자 축소 대신 국채를 추가로 발행하는 경우 이자율 상승과 함께 구축 효과를 나타내어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게 될 가능성이 있다. 넷째, 재정적자의 확대는 결국 후세대의 부담을 가중시키게 됨에 따라 현세대가 초래한 부담을 다음세대가 상환해야 하는 등 세대간 부담의 불공평 문제가 야기되므로 재정적자를

축소해야만 한다.

또한 의료재정의 확충이 필요한 이유는 첫째, 의료보험이 보험으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재정지원이 필요하고, 둘째, 의약분업 실시 및 의료수가의 현실화를 통한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해 추가적으로 재원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이상의 재정 확충 필요성을 기초로 증세를 내용으로 하는 담배 관련 소비세의 개편이 불가피한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는, 첫째, 우리나라의 담배가격이 선진국이나 주요 경쟁상대국에 비해 1/2~1/7 수준에 불과한 등 가격이 매우 낮아 담배 소비세의 소비억제 기능이 매우 미약하고, 지나치게 낮은 가격 수준은 우리에게 가격 인상의 여유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며, 둘째, 국민보건위생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관심(예: 담배 관련 폐암 소송 등)이 크게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비가치재(예: 주류, 담배 등)에 대한 과세를 강화함으로써 추가적인 세원 확충을 통해 재정적자 보전 및 의료재정 확충의 필요성이 크기 때문이다. 즉, 담배와 같이 국민건강에 유해한 재화에 대한 세수를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이 다른 어떤 수단보다 더 설득력이 있기 때문이다. 셋째, 소득세나 법인세 등에 대한 증세는 회복기에 있는 경제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크므로 증세의 대상으로 부적절하며, 넷째, 재산과세의 강화가 바람직하나 지가평가 문제와 조세 저항 등 매우 복잡한 문제가 걸려 있어 역시 부적절하기 때문이다. 다섯째, 식음료품과 가전제품 등에 대한 특별소비세 폐지에 따라 담배나 석유류를 제외하고는 소비세 측면에서의 과세 강화를 통한 증세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경제위기 이후 소득·소비가 크게 감소하는 가운데 유독 담배에 대한 소비지출은 별로 감소하지 않아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의 세부담이 더욱 과중해져 세부담의 역진성이 매우 심각해졌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세부담의 역진성은 담배소비세 과세체계가 종량세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과세체계의 종류에 따라 소득계층별 조세 귀착이 상이하다는 점에서 세부담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담배소비세의 과세체계에 대한 개편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국제적으로 선진국을 중심으로 담배 과세가 강화되는 추세에 있고 우리나라의 정책당국자들도 이에 크게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특히 한국 담배인삼공사 민영화시에는 정부에서 행정적인 부담을 덜게 되어 담배소비세의 개편이 더욱 용이해짐은 물론이다. 일곱째, 담배소비가 가격에 대해 비탄력적이

담배소비가 가격에 대해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세수 증대에도 용이하며,
비교적 자원배분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증세의
제일순위로써
담배소비세의 증세가
논의될 수 있다.

한국담배인삼공사의
경쟁력이 세계 굴지의
담배제조회사와
비교해서는 뒤떨어지므로
종가세 또는 종가세와
종량세 혼합체계로의
전환은 국내기업이
충분히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중·장기에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기 때문에 세수 증대에도 용이하며, 비교적 자원배분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증세의 제일순위로서 담배소비세의 증세가 논의될 수 있다.

더욱이 일본의 경우 1998년에 새로이 국세로서 담배특별세가 신설되었으며, 이것이 재정적자 축소 및 기타 재정기능 확충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도 우리도 담배에 대한 세율 조정 또는 세목 신설을 통해 담배 소비 억제 및 세원 확충을 기할 필요가 있다.

V. 개편의 기본방향

1. 담배소비세 관련 기본개편방향

우선 담배소비의 억제 및 재정적자 축소를 위한 증세 방안으로서 담배소비세율 인상을 통한 가격 인상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담배소비세율의 조정에 있어서는 과세체계의 개편 문제, 새로운 세목 신설 문제, 세율 수준 문제 등 크게 세 가지 기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가. 과세체계 개편 문제

먼저 과세체계의 개편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시장에서의 국내산업의 경쟁력, 수입담배와의 가격전쟁 가능성, 세부담의 형평성, 비가치재에 대한 소비 억제의 필요성, 덤핑 가능성, 세수 탄력성 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한국담배인삼공사의 경쟁력이 과거에 비해 크게 향상되기는 하였지만 세계 굴지의 담배제조회사와 비교해서는 아직 경쟁력 측면에서 뒤떨어지므로 종가세 또는 종가세와 종량세 혼합 체계로의 전환은 국내기업이 충분히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중·장기에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세부담의 역진성 측면에서는 종가세가 종량세보다 우월하지만 비가치재로서의 담배소비의 억제를 위해서는 종량세 체계가 보다 효과적이다. 특히 국민건강에 대한 관심이 더욱 고조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할 때 최소한 담배와 관련해서는 후자의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종량세 체계가 더 우월하다.

덤핑의 경우에도 종량세 체계가 종가세 체계보다 우월하다. 그러나 반대로 세

수의 물가탄력성 측면에서 본다면 종가세 체계가 우월하다.

이상에서 보듯이 과세체계 개편과 관련해서는 기준에 따라 장단점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결론을 내리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 그러나 EU의 사례 등을 놓고 볼 때 종가세와 종량세가 혼합된 형태로 개편하는 방안에 대해 보다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

나. 세목 신설 문제

재정적자 보전을 위한 증세 측면에서 담배 관련 소비세의 개편문제를 검토한다면 현재의 담배소비세 체계하에서 세율을 조정하는 것보다는 국세로서 새로운 세목을 신설하거나 기존의 특별소비세에 담배를 신규과세대상으로 포함시키는 방안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현행 담배소비세 체계하에서는 지방세의 증세를 재정적자 축소 또는 의료 재정 확충 문제와 연계시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일본의 경우를 보더라도 국세로서 새로운 세목을 신설 또는 특별소비세의 신규과세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저항 등을 감안하여 세율 인상분의 일부분을 지방정부로 세원을 이전시켜 주는 방안도 함께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 세율 수준 문제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율이 EU 국가에 비해 상당히 낮은 편임을 감안하더라도 담배소비세의 실효세부담률이 상당히 낮음은 부인할 수 없다. 더욱이 실효세부담률이 가장 낮은 미국보다도 절대적 세부담 수준이 낮다는 점을 고려하면 담배에 대한 우리나라의 세부담이 상당히 낮은 편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담배가격 수준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 1/2~1/7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을 놓고 볼 때 가능한 한 세율은 대폭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대폭적인 세율 인상은 극심한 조세 저항을 유발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증세분의 일부를 흡연과 관련한 의료 재정 등에 배분해주는 방법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그 밖에 세율 수준(또는 가격 수준)과 관련하여 지나치게 세금 수준이 높게 되면 영국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담배 밀수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담배 관련 소비세의
개편은 국세로서
새로운 세목을
신설하거나 기존의
특별소비세에 담배를
신규과세대상으로
포함시키는 방안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내 담배는
가격인가제로
운용되고 있고,
수입담배는
사실상 가격신고제로
운용되고 있어
역차별 현상이
빛어지고 있다.

2. 기타 개편문제

가. 국내 담배제조시장 독점 철폐 및 대외개방 · 관세부과 문제

한미 담배양해록의 합의사항에 따라 국내 담배제조시장이 현재와 같이 대외적으로 폐쇄되어 있는 동안에는 수입완제품에 대한 관세는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만약 한국담배인삼공사의 제조 독점을 해제하고 제조시장을 대외적으로 개방한다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

이 경우에 어떠한 것이 더 바람직한지는 시장 개방과 함께 완제품 수입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와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의 비용/편익을 비교하여야만 알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을 놓고 볼 때 외국기업의 국내 담배 제조시장 진출이 별로 용이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만큼 제조시장 개방 및 관세부과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경우 국내 잎담배생산업자에 대한 지원문제가 발생한다. 즉, 제조시장을 개방하게 되는 경우에는 외국 제조자에게 국내 생산 잎담배를 수매하도록 강제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한국담배인삼공사에 대해서도 규제를 해제해야 하며 이는 잎담배경작자들로부터의 반발과 저항을 유발할 것이기 때문이다.

나. 가격 자율화 문제

현재 국내 담배는 가격인가제로 운용되고 있고, 수입담배는 사실상 가격신고제로 운용되고 있어 역차별 현상이 빛어지고 있다. 이는 수입담배의 경우 시장점유율이 낮기 때문에 물가당국의 관리대상에서 제외되고 시장점유율이 높은 국산담배만이 물가관리대상에 포함된다는 점 때문이다. 그러나 중 · 장기적으로는 물론이고 단기적으로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킨다는 차원에서는 실질적인 가격자율화가 필요하다. 일본의 경우에도 형식적으로는 가격인가제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가격신고제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VI. 요약 및 결론

최근 경제위기 이후 심각해진 재정적자를 축소하고 종국적으로 국가 부채의 축소를 도모하며,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의료서비스 개선 및 관련 재정기능 확충을

위해 담배에 대한 신규 세원 발굴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즉, 최근 흡연의 유해성에 대한 인식이 고조되면서 국제적으로 지나치게 낮은 국내 담배가격을 국제 수준으로 인상하여 담배 소비를 억제하면서 세원을 확충할 필요성이 점점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그리스, 일본 등과 함께 1인당 담배소비량이 세계 최고 수준이며 이에 따라 흡연에 따른 폐해가 심화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담배가격은 선진국의 1/7~1/2 수준에 불과해 담배 관련 세제가 더 이상 비가치재에 대한 소비억제적 조세(sumptuary tax)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전통적으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석유류, 주류와 더불어 담배에 대해 매우 높은 소비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고 있다. 이는 이들 품목이 대표적인 재정품목으로서 세수 확보에 유리하다는 데에서 고율과세의 목적을 찾을 수 있다. 그렇지만 이 외에도 이들 품목이 지니는 소비의 외부불경제의 축소를 위해 소비를 억제하고자 고율과세하는 측면도 있다. 종전에는 후자보다 전자를 더 중요시하였으나 최근에는 후자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세 가지 품목 가운데 담배의 경우에는 실효세부담률이 가장 높은 편이다. 특히 EU의 경우에는 세제구조상 소비자가격 대비 담배의 실효세율이 최소 70% 이상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실효세율이 EU 수준에 못미칠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세율이 낮은 국가에 속하는 미국보다도 절대세액이 30% 정도 낮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는 담배에 대한 소비세 과세의 실효성이 매우 낮음에 따라 담배 소비가 무분별하게 확산되는 추세를 억제하지 못하고 있으며, 더욱이 종량세 과세체계 채택 이후 세율인상률이 물가상승률에 크게 미달하여 실효세부담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그러므로 담배 소비 억제를 통한 국민보건 증진을 위해 담배 관련 세제를 강화하여 소비 억제를 도모하고, 과세 강화에 따른 세수 증가분을 재정적자 보전 및 의료재정 확충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KPM**

우리나라에서는
종량세 과세체계 채택
이후 세율인상률이
물가상승률에 크게
미달하여 실효세부담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동남아의 부실채권 처리과정과 시사점



金 珍 洙 연구위원(jinskim@kipf.re.kr)

말레이시아가 채택한

대응방식은 IMF의

처방을 따르지 않고

국제적인 공조 없이

자국의 실정에 맞는

정책을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것이었다.

I. 서론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한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대응방식은 각국이 처한 현실에 따라 크게 두 가지 형태의 다른 모습을 보였다. 먼저 태국, 인도네시아 등이 채택한 대응방식은 민간부문 외채의 과다로 유동성 문제에 직면함에 따라 IMF에 구제금융의 지원을 요청하고 자유화와 개방을 글로벌 스탠다드로 인정하고 IMF 주도의 금융 및 기업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것이었다. 이들 국가들은 외환위기 탈출을 위해서는 외국인 투자가의 신인도 회복이 급선무라고 인식하였으며, IMF 프로그램 이행을 국가신인도 회복의 척도로 인정하였다. 이 방식은 같은 시기에 외환위기를 겪은 우리나라가 채택한 방식과 동일한 것이다.

반면 말레이시아가 채택한 대응방식은 IMF의 처방을 따르지 않고 국제적인 공조 없이 자국의 실정에 맞는 정책을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것이었다. 외화 유동성 문제가 없었던 말레이시아는 IMF의 지원을 받지 않았고 외국인 투자가의 신뢰 회복보다는 국내의 부채가 많은 기업을 살리기 위해 경기부양에 중점을 두었다. 말레이시아가 독자 노선을 걷는 데에는 전후 아시아의 고도성장기에 대해 긍지를 가지고 있던 마하티르 수상의 철학도 크게 작용하였다. 그는 동남아의 경제위기는 이 지역의 고도성장을 시샘한 서방의 거대 자본과 미국이 조정한 결과라고 판단하였다. 특히 유대인을 중심으로 한 국제투기 자본가들에 대한 이슬람 문화국

*이 원고는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한국조세연구원의 공식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의 수장으로서의 반감도 작용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그는 세계적 자유화 조류에 반대하여 단기자본의 이동을 금융위기의 주범으로 인정하고 이를 규제하자는 주장까지 하였다.

경제위기에 대한 대응방식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들 국가들은 공통적으로 경제위기가 발생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금융기관의 부실경영과 금융산업 전체의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인식했다. 특히 이들 국가들은 금융산업의 자율화와 개방화의 범세계적인 추세 속에서 이러한 변화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했음을 인정하여 그 해결방안으로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이 다른 어떤 부문에 우선해서 수행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들 국가들은 회생이 불가능한 부실금융기관을 폐쇄·정리하고 회생이 가능한 부실금융기관에 공적 자금을 투입하는 한편, 부실채권(NPL: Non Performing Loan)을 제거함으로써 자본을 재구축하려는 노력을 행하고 있다.

그러나 각국의 부실채권의 규모를 파악하는 일은 매우 어렵다. 부실채권의 분류기준이 나라마다 다르며, 부실채권을 정리하는 기구에 이전되지 않고 금융기관에 계속 남아 있는 부실채권의 경우에는 그 규모가 정확하게 밝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각국의 금융기관에 존재하는 부실채권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보다는 경제위기를 겪은 동남아 각국이 부실채권을 처리하는 과정과 내용을 살펴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본고에서는 먼저 동남아 국가들의 경제위기 발생원인과 그 진행과정을 국가별로 살펴보고, 다음으로 이들 국가들이 어떤 방식으로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처리하고 있는지 그 과정을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동남아 국가들의 부실채권 처리 과정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을 생각해 본다.

II. 태국

1. 경제위기의 발생원인과 진행과정

태국은 아시아 경제위기의 발상지이다. 태국의 경제위기는 1997년 당시 경상수지 및 외채가 지속적으로 큰 규모로 누적되었고 과도한 자본 유입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미흡했으며, 환율정책이 매우 경직적이었고 금융기관의 부실화가 심각

경제위기에 대한
대응방식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들 국가들은
공통적으로 경제위기가
발생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금융기관의
부실경영과 금융산업
전체의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인식했다.

정부의 금융 및 자본 자유화 정책에 힘입어 실제 필요 이상의 대규모 외자가 유입되었다. 그러나 미국 달러로 대출을 받은 은행들은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여 과잉대출금의 상당 부분을 부동산에 과잉으로 투자하였다.

한 수준에 달해 있었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1980년대 태국의 금융시장은 매우 열악한 수준이었다. 주식시장은 규모가 매우 작았으며, 대부분의 비즈니스는 몇 개의 대규모의 은행 및 비은행 금융기관의 손에 있었다. 특히 외국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금융시장을 거의 개방하지 않았다. 예를 들면 1944년 설립된 국내은행인 Bangkok Bank가 499개의 지점을 가지고 있었지만, 100년 전에 설립된 첫 번째 외국은행인 Standard Chartered의 경우는 겨우 1개의 지점만이 허용되었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 BIBF(Bangkok International Banking Facilities)제도가 등장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중앙은행인 Bank of Thailand는 외국은행에 BIBF 자격을 주어 국내 소매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으며, 국내은행에도 BIBF 자격을 주어 외국에서 대출을 받아 외국에서 여신을 하거나 외국에서 대출을 받아 국내에서 여신을 하는 역외대출(off-shore loans)을 허용하였다. 이와 같은 정부의 금융 및 자본 자유화 정책에 힘입어 실제 필요 이상의 대규모 외자가 유입되었다. 대규모 외자가 유입될 수 있었던 이유는 태국이 동남아시아에서 부상하는 유망한 시장으로 인식되었고, 당시 북미와 유럽의 이자율과 투자가 하락한 반면 아시아의 투자수익률이 현저하게 높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 달러로 대출을 받은 은행들은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여 과잉대출금의 상당 부분을 부동산에 과잉으로 투자하였다¹⁾.

한편 태국 경제위기의 첫 번째 현상으로 나타난 것이 수출의 급격한 감소였다. 태국은 1984년 이후 자국통화의 가치를 미국의 달러를 중심으로 주요 선진국 통화와 연계시키는 복수통화바스켓제도(currency basket system)를 채택하고 있었는데, 1995년 중반 대외 경제 여건과 외환의 수급사정이 급격하게 변동하는 상황에서도 이를 고수하였다. 1995년 중반 이후 미국 달러화의 강세와 일본 엔화의 약세로 인해 태국 바트화가 과대평가되었다. 이에 따라 태국은 가격 경쟁력을 상실하게 됨으로써 수출이 급감하여 경상수지 적자폭이 확대되었다. 즉,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6년 이전 수출성장률은 매년 15~20%를 기록했으나, 1996년에 들어와서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함으로써 무역수지 적자가 94억 9,000만 달러로 확대되고 경상수지 적자가 146억 9천만 달러로 확대되었다. 그 결과 경상수지적자는 IMF의 경고 수준인 GDP 대비 5%를 지속적으로 초과하여 7.9%를 기록하였으며, GDP 대비 총외채 비율은 IMF의 경고 수준인 30%를 지

1) 이에 따라 현재와 같은 경제회복 단계가 계속된다 하더라도 사무실이 모두 임대되려면 향후 10년이 라는 세월이 더 걸려야 할 정도로 파잉 공급되었다.

속적으로 초과하여 54%를 기록하였다.

〈표 1〉 태국의 경제지표

(단위: 십억달러, %)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GDP 성장률	7.0	7.1	8.2	8.6	8.7	6.7	-1.7	-10.2	4.2
실업률	3.5	3.6	3.4	3.2	3.0	3.3	3.7	7.0	n.a.
인플레이션율	5.7	4.1	4.6	5.1	5.8	4.8	5.6	8.1	0.3
환율(Baht/US\$)	25.28	25.52	25.54	25.09	25.19	25.61	31.37	41.40	37.84
무역수지	-5.99	-4.16	-4.29	-3.72	-7.97	-9.49	-4.60	12.20	8.90
수출	28.23	32.10	36.41	44.48	55.45	54.41	56.70	52.90	56.70
수입	34.22	36.26	40.70	48.20	63.42	63.90	61.30	40.70	47.80
경상수지	-7.57	-6.30	-6.36	-8.09	-13.56	-14.69	-3.00	14.30	11.30
GDP대비	-7.7	-5.7	-5.6	-5.9	-8.2	-7.9	-2.1	12.8	9.0
외채	35.99	39.61	45.84	60.99	65.00	89.00	97.00	105.80	n.a.
GDP대비	36.9	36.2	37.1	43.1	42.4	54.0	61.0	85.5	n.a.

자료: Thomson Bankwatch Inc.
FRA.

태국 정부는
마침내 1997년 7월 2일
환율제도를 기존의
복수통화바스켓제도에서
관리변동환율제도로
변경하고 IMF에
긴급자금 지원을
요청하였으며, IMF로부터
총 172억 달러에 달하는
협조융자를 받았다.

이와 같이 대규모의 경상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외채가 증가하는 가운데 1996년 이후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면서 금융기관의 부실문제가 표면화되었다. 이에 따라 태국경제에 대한 외국투자자들의 신뢰가 크게 저하되었다. 1997년 초에 이르러 바트화의 가치를 유지시키는 것이 어렵다는 의견이 일부 전문가에 의해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은행인 Bank of Thailand는 이를 묵살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마침내 헤지펀드를 중심으로 1996년과 1997년 세 차례에 걸쳐 태국 바트화에 대한 대규모 투매가 있자 이에 대응하여 Bank of Thailand는 바트화의 가치를 인위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보유하고 있던 330억 달러의 상당 부분을 소모적으로 사용해 버렸다.

이와 같은 환율 방어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바트화에 대한 투매가 지속되자 태국 정부는 마침내 1997년 7월 2일 환율제도를 기존의 복수통화바스켓제도에서 관리변동환율제도(managed floating system)로 변경하고 IMF에 긴급자금 지원을 요청하였으며, IMF로부터 총 172억 달러에 달하는 협조융자를 받았다.

1998년에 들어와서 환율이 대폭 상승하고 주가는 하락했으며 외채 원리금 부담 증가와 내수 침체로 기업의 환경은 더욱 악화되었다. 이에 따라 GDP는

태국 경제는 1999년 4.2%의 성장을 하였으며, 향후 전망은 대체로 V자형의 급속한 성장은 어려울 것이나 완만한 회복을 할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의견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10.2%의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였고, 실업률이 7%에 달할 정도로 경제상황은 더 악화되었다. 다만 환율의 상승과 수입의 감소로 인해 무역수지와 경상수지가 대폭 개선되면서 외환위기를 서서히 벗어나게 되었다.

1999년 2월부터 제조업 생산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플러스로 전환하기 시작했으며, 4월과 5월중에 국제신용평가기관들이 잇달아 신용등급을 상향조정하는 것을 계기로 주식시장이 활황세를 보이게 되었다. 수출도 4월부터 전년 동기 대비 플러스로 전환되었으며, 금리도 급속히 하락하여 콜금리는 1998년 12월 이후 2% 수준을 유지하였다. 이에 따라 태국 경제는 1999년 4.2%의 성장을 하였으며, 향후 전망은 대체로 V자형의 급속한 성장은 어려울 것이나 완만한 회복을 할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의견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2. 부실채권의 처리과정

태국 금융기관들의 부실채권(NPL)²⁾ 규모는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8년 말을 기준으로 은행의 경우 전체 여신 5조 4,798억 바트의 42.9%에 달하는 2조 3,508억 바트에 달했으며, 파이낸스회사의 경우는 전체 여신 4,614억 바트의 70.2%인 3,237억 바트에 달하였다. 은행의 부실채권 규모는 파이낸스회사의 그것에 비해 7.3배에 달하는 규모였다.

1999년 5월 은행의 부실채권이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며, 그 후 부실채권의 규모는 줄어들었다. 2000년 4월 말 현재 은행의 부실채권은 전체 여신 5조 1,807억 바트의 36.1%에 달하는 1조 8,701억 바트였으며, 파이낸스회사의 부실채권은 전체 여신 1,790억 바트의 47.3%인 847억 바트였다.

태국에서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처리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첫째, 경제위기 직후 폐쇄한 파이낸스회사의 부실자산에 대해서는 다음에 설명할 FRA(Financial Sector Restructuring Agency)가 일괄 인수하여 처리하도록 하였다. 둘째, 폐쇄되지 않은 금융기관, 특히 은행의 부실채권은 FRA가 취급하지 않는 대신 각 금융기관별로 자산관리회사(Asset Management Corporation)를 설립하여 처리하도록 하였다.

먼저 폐쇄된 파이낸스회사의 부실채권을 처리하는 과정을 살펴보자. FRA는 비상법령인 Emergency Decree on Sector Restructuring B.E. 2540에 의해

2) 원금 또는 이자가 3개월 이상 연체되고 있는 대출채권을 말한다.

〈표 2〉 태국의 금융기관별 NPL 현황

(단위: 십억바트)

	1998			1999 ¹⁾			2000 ²⁾		
	총대출 (A)	NPL (B)	B/A	총대출 (A)	NPL (B)	B/A	총대출 (A)	NPL (B)	B/A
민간은행	3,063	1,240	40.48	3,041	1,302	42.82	2,881	828	28.75
국책은행	1,660	1,037	52.45	1,687	1,170	69.36	1,667	996	59.76
외국은행	757	74	9.81	738	85	11.52	632	46	7.23
소 계	5,480	2,351	42.90	5,466	2,557	46.79	5,181	1,870	36.10
파이낸스회사	461	324	70.16	256	172	67.18	179	85	47.29
합 계	5,941	2,675	45.02	5,722	2,729	47.70	5,360	1,955	36.47

주: 1) 1999년 5월 말 기준임.

2) 2000년 4월 말 기준임.

자료: Bank of Thailand.

1997년 10월 24일 설립되었다³⁾. FRA는 1997년 6월 26일과 8월 5일에 재무부 장관의 명령에 의해 영업이 정지된 58개 파이낸스회사(finance company)의 회생 및 정리를 감독하고 영업이 정지된 파이낸스회사의 선의의 예금자와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설립된 독립기관이다⁴⁾.

영업이 정지된 58개 파이낸스회사는 금융기관 인수·합병 감독위원회(Finance Ministry's Committee to Supervise Mergers and Acquisition of Financial Institutions)의 명령에 의해 1997년 10월 31일까지 38개의 회생계획을 제출하였다. 제출된 계획을 평가하기 위한 엄밀한 기준이 금융기관 인수·합병 위원회에 의해 사전에 정해졌으며, FRA 이사회에 의해 확정되었다. 그 기준은 영업 정지된 파이낸스회사의 적절한 자본 재구조, 채무 상환계획, 유동성 관리를 위한 충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자금 조달, 경영의 질 등의 네 가지였다. 제출된 회생계획이 승인을 받으려면 각 기준별 평가를 통과해야 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이 기준은 포기나 면제 없이 엄격히 적용되었다.

1997년 12월 8일, FRA 이사회는 58개 영업 정지된 파이낸스회사 중에서 Kiatnakin Finance and Securities Public Co., Ltd.와 Bangkok Investment Public Co., Ltd. 두 파이낸스회사가 제출한 계획만을 승인하였으며⁵⁾, 따라서 나머지 56개 파이낸스회사의 폐쇄가 결정되었다.

FRA는 폐쇄된 56개 파이낸스회사를 대신하여 부실채권을 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FRA가 처리를 맡아 56개 파이낸스회사로부터 일괄 인수한 부실채

3) FRA는 Ministry of Finance가 World Bank로부터 대출을 받은 5억 바트로 설립되었으며, 자산을 매각하면 매각대금의 1%를 수수료로 받는다. FRA 이사회의 이사는 내각의 동의를 받은 재무부의 지명을 받은 의장, 재무부의 대행자, Bank of Thailand의 대행자, 두 명의 저명인사, 사무국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FRA는 사무국장 아래 9개의 부서로 조직되어 있다.

4) 1997년 6월 26일 16개 금융기관이 재무부장관의 명령에 의해 영업이 정지되었고, 같은 해 8월 5일 42개의 금융기관이 추가로 영업이 정지되었다.

5) 현재 이 두 금융기관은 승인된 회생계획의 실행을 감독하는 FRA의 감시하에 있다. FRA는 회생이 만족스럽게 되었다고 판단되면, 이를 재무부에 보고하게 된다. 재무부는 태국은 은행(Bank of Thailand)과 협조하여 영업 정지를 해제하고 감독권을 태국은행에 이양할 것이다.

FRA는
2000년 3월 현재
총 223억 9천만 달러의
자산 중에서
86.5%에 달하는
193억 7천만 달러를
이미 처분하였고,
13.5%에 불과한
30억 2천만 달러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권의 규모는 <표 3>에서와 같이 223억 9천만 달러에 달했다⁶⁾. 그 중 주요자산(core asset)은 202억 9천만 달러였으며, 상업용지 및 부동산과 소규모 대출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건물, 비품 등의 비주요자산(non-core asset)은 21억 달러에 달하였다.

FRA의 자산처분 원칙은 업무 처리의 투명성 및 신뢰성, 입찰자에 대한 비차별성 등을 바탕으로 자산의 가치가 더 낮아지기 전에 가능한 빨리 입찰을 통해 처분하려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2000년 3월 현재 FRA는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요 자산 202억 9천만 달러 중에서 157억 9,600만 달러의 자산을 40억 500만 달러에 매각하여 25.3%의 회수율을 보였다. 또한 FRA는 비주요자산 21억 달러 중에서 18억 3천만 달러의 자산을 9억 1,620만 달러에 매각하여 49.3%의 회수

<표 3> FRA의 부실자산 포트폴리오

(단위: 십억달러, %)

	금액	비중
상업용지 및 부동산 (commercial and real estate)	12.13	54.17
고용구매 (hire purchase)	1.71	7.64
증권유통금융 (margin loans)	0.79	3.52
할인어음 (discounted bills)	0.79	3.52
주택저당대출 (residential mortgage loans)	0.66	2.95
소규모대출 (small loans)	4.21	18.80
주요자산 (core asset)	20.29	90.60
비주요자산 (non-core asset)	2.10	9.40
합 계	22.39	100.0

주: 1997년 8월 말 기준임.

자료: FRA.

6) 영업이 정지된 58개 파이낸스회사의 예금자에 대해서 FIDF(Financial Institutions Development Fund)는 예금의 종류에 관계없이 모든 예금을 완전히 보호하였다. 즉, 예금자들이 가지고 있는 증서 대신에 시장이자율로 이자를 지급하고 전환예금의 금액에 따라 6개월 내지 5년 내에 되찾을 수 있는 Krung Thai Bank나 Krungthai Thanakit가 발행한 증서와 교환할 수 있는 옵션을 주었다. FIDF는 이를 위해 5,000억바트의 채권을 발행하였으며, 향후 FIDF가 입게 되는 손실은 정부가 책임을 지기로 했다.

<표 4> FRA의 자산매각 현황

(단위: 십억달러, %)

	장부가	입찰가	회수율
핵심 자산	15.80	4.00	25.35
비핵심자산	1.83	0.91	49.28
소 계	17.63	4.91	27.84
채권 회수	1.74	1.95	111.89
합 계	19.37	6.86	35.39

주: 2000년 3월 말 기준임.

자료: FRA.

율을 보였다. 그리고 FRA는 19억 5천만 달러의 채권을 회수하여 원금 17억 4천만 달러의 111.9%에 해당하는 회수율을 보였다.

이렇게 해서 FRA는 2000년 3월 현재 총 223억 9천만 달러의 자산 중에서 86.5%에 달하는 193억 7천만 달러를 이미 처분하였고, 13.5%에 불과한 30억 2천만 달러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AMC(Asset Management Corporation)는 FRA가 설립되면서 함께 설립된 기구로서 재무부가 100억 바트의 자본금을 출자하여 설립한 기구이다⁷⁾. FRA가 매각하는 부실채권은 입찰을 통해 가능하면 민간부문에서 인수하도록 하고, 그것이 안 되는 경우 AMC가 이를 인수하여 자산의 가치를 극대화하여 매각하려는 것이다. 이에 따라 AMC는 FRA의 자산매각 입찰 중에서 첫 번째 입찰에는 참여하지 않고 두 번째 입찰에 참여하여 남아 있는 자산을 낙찰 받는다.

AMC는 FRA의 자산매각 입찰에 응하여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FRA가 매각하는 자산의 33%를 낙찰 받았다. AMC는 1,970억 4,700만 바트의 주요자산을 338억 5,300만 바트에 낙찰 받았으며, 19억 4,000만 바트의 비주요자산을 10억 2,700만 바트에 낙찰 받았다. AMC는 부실채권의 매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5차례에 걸쳐 339억 5,800만 바트에 달하는 채권을 발행하였다.

AMC는 매입한 자산을 관리하여 그 가치를 극대화한 후 이를 매각하고자 한다. 즉, 채무자에게 채무변제의 기회를 주고 자산의 가치를 극대화한 후 사적투자, 공개입찰, 증권화, 매각 등의 방법으로 자산을 처분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폐쇄되지 않은 금융기관, 특히 은행의 부실채권의 경우를 살펴보자. 10개에 달하는 은행이 각각 자회사인 AMC를 설립하여 부실자산을 처리하고 있

AMC는 매입한 자산을 관리하여 그 가치를 극대화한 후 이를 매각하고자 한다. 즉, 채무자에게 채무변제의 기회를 주고 자산의 가치를 극대화한 후 사적투자, 공개입찰, 증권화, 매각 등의 방법으로 자산을 처분할 예정이다.

<표 5> 태국의 부실자산 인수기관

(단위: %)

	국내기관		외국기관
AMC	33	Goldman Sachs	35
Kiatnakin Finance	11	GE Capital	7
V.Conglomerate	2	Global Thai	6
National Finance	2	Others	2
Others	2		
	49.8		50.2

자료: FRA.

7) AMC는 국내외로부터 얻은 대출에 대해서 자본금의 12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무부의 지급보증을 받는다.

1990년 이후
인도네시아의 외환시장과
자본시장은 빠른 속도로
성장했으나 적절한
하부구조가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환율의
급변동에 외환시장 및
금융시장은 쉽게
영향을 받았다.

다. Krung Thai Bank, Siam City Bank, Bangkok Metropolitan Bank, Bank Thia, 그리고 Radanasin Bank 등의 5개 국책은행은 각각 자회사인 AMC를 설립하고 총 6,759억 바트의 부실채권을 이전하였다. Bangkok Bank, Thai Farmers Bank, Siam Commercial Bank, Bank of Ayudhya, 그리고 Thai Military Bank 등의 5개 민간은행도 각각 자회사인 AMC를 설립하고 총 3,600억 바트의 부실채권을 이전하였다.

III. 인도네시아

1. 경제위기의 발생원인과 진행과정

아시아의 경제위기는 다른 어떤 국가보다도 인도네시아에 큰 영향을 미쳤다. 1997년 중반 바트화의 절하에 따라 루피아화가 급격히 절하되면서 인도네시아 경제는 나빠지기 시작했으며, 이러한 상황이 점점 악화됨으로써 금융 및 경제위기를 겪게 되었다.

인도네시아가 특히 심각한 위기를 겪게 된 것은 인도네시아 경제에 다음과 같은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먼저 외환시장과 자본시장의 구조적인 문제를 살펴보자. 1990년 이후 인도네시아의 외환시장과 자본시장은 빠른 속도로 성장했다. 그러나 적절한 하부구조가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환율의 급변동에 외환시장 및 금융시장은 쉽게 영향을 받았다. 이러한 구조적 약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변동환율제도 및 자유로운 자본 유출입 정책으로 인해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단기대출이 급속히 증가하였다. 또한 경제위기 전에 민간부문에 대한 외국금융기관 여신의 50%가 1년 미만일 정도로 단기채무가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둘째,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대출의 대부분이 전혀 헤지(hedge)되지 않았다. 셋째, 자본시장이 은행부분의 성장에 비해 매우 열등하였으며, 이로 인해 기업의 자본이나 투자는 주로 은행부문에 의존하고 있었다. 또한 외국투자자들이 자본시장에서 지배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은행부분의 구조적인 문제를 살펴보자. 1988년 이후 은행부분의 자유화에 의해 인도네시아 은행부분은 매우 빠르게 성장하였다. 그러나 기존의 법과 규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포괄적이고, 상세하고, 잘 규정된 은행

규제와 같은 필수적인 하부구조가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구조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었다. 첫째, 많은 수의 은행과 금융기관으로 인해 경쟁이 치열해졌고 자산의 질을 관리하는 데 소홀했다. 경제위기 직전에 은행의 수는 무려 238개였으며 부실채권의 비중이 무려 70%에 달하였다. 둘째, 은행경영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했다. 셋째, 자산과 부채의 구조가 균형적이지 못함에 따라 단기 이자율의 변동이 심했다. 넷째, 은행의 자본규모가 다른 나라의 은행에 비해 비교적 작은 편이었다. 다섯째,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출이 많았으며 부동산 부문에 대한 대출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였다. 여섯째, 장부상에 기재되지 않고 해지되지 않은 부채가 은행부문 자산의 63%를 차지하였다.

마지막으로 실물부문의 구조적인 문제를 살펴보자. 실물부문을 이루고 있는 기업들은 다음과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첫째, 단기음자를 받아 장기투자를 하였다. 둘째, 기업의 대출시 서류에 표시되는 화폐와 매출에 의해 받는 화폐가 일치하지 않았으며, 이에 따른 위험이 헤지되지 않았다. 셋째, 특정부문에 과잉투자되었으며, 프로젝트에 대한 이윤이 실제와 관계없이 가산되었기 때문에 장부가치가 실제보다 지나치게 과대평가되었다. 넷째, 경영기술이 부족했으며 전문적인 인력이 부족하였다. 다섯째, 부적절한 기업지배구조 및 회계시스템으로 인해 기업은 지배주주의 이익과 정치적 이해의 수단에 지나지 않았다.

인도네시아는 이상과 같은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태국으로부터 시작된 경제위기를 피할 수 없었다. 경제위기의 초기에 인도네시아 정부는 루피아화를 안정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금융 및 재정정책을 펼쳤다. 첫째, 외환보유고를 유지하면서도 금융당국이 외환시장에 쉽게 개입할 수 있도록 환율변동폭을 확대하였다. 둘째, 자본의 유출을 억제하고 루피아화의 절하를 줄이기 위해서 이자율을 인상하였다. 셋째,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대형 국책 프로젝트를 연기하는 방법으로 긴축정책을 펼쳤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일관성이 없었으며 납득이 가지 않는 면이 있었다. 첫째, 프로젝트의 연기가 결정된 후, 곧 집권층의 가족과 친척이 관련된 상당 부분의 프로젝트가 재개되었다. 이와 같은 정책의 수정으로 인해 루피아화의 공급이 확대되었으며 환율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뿐 아니라 시장참여자들의 정부에 대한 신뢰가 없어졌다. 둘째, 인상된 이자율이 기업경영에 부담스럽다는 기업가들의 요청에 따라 다시 이자율을 인하하였다.

경제위기의 초기에
인도네시아 정부는
루피아화를
안정시키기 위해 금융 및
재정정책을 펼쳤다.
그러나 일관성이 없었으며
납득이 가지 않는
면이 있었다.

단기외채를 해결하고
환율의 급변동을 막으려는
정책이 없었기 때문에
시장참여자가 루피아화
가치의 지속적인 절하를
예상하고 투기를 하도록
내버려두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1997년 11월에 인도네시아 정부는 IMF, World Bank, 그리고 ADB 등의 지원을 받아 금융 및 재정정책을 통해 거시경제를 안정시키고 금융 및 기업의 구조조정을 시행하려는 종합적인 정책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불행히도 단기외채의 상당부분과 관련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수단은 고려하지 않았다. 단기외채를 해결하고 환율의 급변동을 막으려는 정책이 없었기 때문에 시장참여자가 루피아화 가치의 지속적인 절하를 예상하고 투기를 하도록 내버려두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루피아화의 지속적인 절하에 따라 개인과 기업은 루피아화에 대한 신뢰를 잃고 무조건 미국 달러를 사려는 패닉(panic) 현상이 나타났다. 중앙은행인 Bank Indonesia의 740억 달러에 달하는 시장 개입에도 불구하고 1997년 말까지 루피아화는 경제위기 전에 비해 미국 달러에 대해 무려 100%나 절하되었다. 더구나 경제위기의 초반에 외국자본의 유입이 중단됨에 따라 유동성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다.

인도네시아는 IMF로부터 총 423억 달러에 달하는 지원금음을 받았다. 그러나 지원금음을 받은 후에도 환율은 대폭 상승하고 주가는 하락했으며 외채원리금 부담 증가와 내수 침체로 기업의 경영환경은 더욱 악화되었다. 1999년 동남아 국가들의 수출이 회복되었으나 인도네시아의 수출은 1998년에 비해 오히려 감소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큰 폭의 수입의 감소로 인해 80억 달러의 경상수지 흑

〈표 6〉 인도네시아의 경제지표

(단위: 십억달러, %)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GDP 성장률	7.0	6.5	6.5	7.3	8.1	7.8	4.7	-13.2	0.2
실업률	2.7	2.6	2.5	2.5	2.3	2.2	3.0	n.a.	n.a.
인플레이션율	9.4	7.5	9.7	9.2	8.6	6.6	11.6	47.0	20.5
환율(Rupiah/US\$)	1,992	2,062	2,110	2,200	2,308	2,348	5,400	10,013	7,855
무역수지	3.27	6.69	8.49	8.06	4.50	3.00	11.84	20.40	n.a.
수출	29.14	33.97	36.82	40.05	45.42	51.00	53.38	60.40	n.a.
수입	25.87	27.28	28.33	31.99	40.92	48.00	41.54	40.00	n.a.
경상수지	-4.26	-2.78	-2.12	-2.79	-7.02	-7.80	-9.56	-9.00	8
GDP대비	-3.6	-2.2	-1.3	-1.6	-3.9	-4.0	-3.9	3.0	n.a.
외채	79.78	88.30	89.48	96.50	109.20	115.00	129.00	140.00	n.a.
GDP대비	65.1	66.4	58.9	57.4	55.8	51.8	60.9	71.0	n.a.

자료: Thomson Bankwatch Inc.
IMF.

자를 시현하였다. 그러나 국내의 정치적 불안과 공급과잉으로 인해 1999년 국내외 기업의 신규투자가 전년도에 비해 23%가 감소하였으며, 이는 인도네시아 경기 침체의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 부실채권 정리과정

인도네시아 금융기관들의 부실채권(NPL) 규모에 관한 공식적인 통계는 없다. 다만 인도네시아의 부실채권은 1998년 12월 기준으로 전체 여신의 57%에 달했다는 비공식적인 통계가 있다⁸⁾. 인도네시아에서는 금융부분의 구조조정을 IBRA(Indonesian Bank Restructuring Agency)가 전적으로 맡아서 하기 때문에 IBRA가 은행에서 이전을 받아 처리하고 있는 234조 루피아에 달하는 부실채권의 규모가 아마도 인도네시아 부실채권의 최소한의 규모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표 7〉 IBRA 부실채권 포트폴리오

(단위: 개, 명, 兆루피아)

이전은행	이전자산	현재상황	계좌수	채무자수	금액
38개 BBKU	전부	진행중	121,149	101,110	28.5
10개 BBO	전부	완료	63,618	29,963	33.5
4개 기존 BTO	Category 5	완료	28,641	16,563	36.6
2개 신 BTO	Category 5	진행중	8,866	6,579	8.3
7개 자본재구성 완료은행	Category 5	완료	7,803	5,729	16.2
7개 국책은행	Category 5	완료	33,497	14,745	111.0
합 계			263,574	174,689	234.1

주: 1999년 9월 말 기준임.

자료: IBRA.

IBRA는 환율의 급변동과 국내경제의 침체로 인해 국내은행 산업이 부실화된 상황에서 은행을 감독하고 발전·회복시키려는 목적으로 1998년 1월 대통령령(Presidential Decree No. 27)에 의해 설립된 특별기구이다. IBRA는 재무부의 산하기구이며 5년 한시기한으로 설립되었다.

IBRA의 임무는 은행 및 기업의 구조조정을 통해서 경제의 회복에 일조하고 공적자금의 회복을 극대화하려는 것이다. IBRA의 은행구조조정 프로그램은 [그림 1]과 같이 요약된다. 먼저 IBRA는 Bank Indonesia와 협조하여 공공의 신뢰를

인도네시아의
부실채권은
1998년 12월 기준으로
전체 여신의 57%에
달했다는 비공식적인
통계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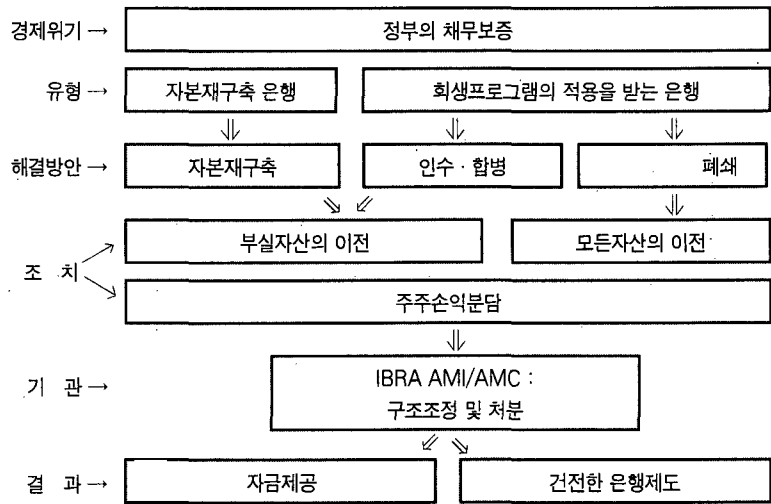
8) Danaharta, *Annual Report 1999, 2000*.

IBRA의 임무는 은행 및 기업의 구조조정을 통해서 경제의 회복에 일조하고 공적자금의 회복을 극대화하려는 것이다. 구조조정 대상 은행은 CAR을 기준으로 하여 자본 재구축을 해야 할 은행과 회생프로그램을 따라야 하는 은행으로 구분하였다

회복하고 은행부문을 안정시키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모든 상업은행의 채무를 보증하였다⁹⁾. 구조조정 대상 은행은 CAR(Capital Adequate Ratio)을 기준으로 하여 자본 재구축을 해야 할 은행과 회생프로그램을 따라야 하는 은행으로 구분하였다¹⁰⁾.

현재까지 폐쇄된 48개의 은행을 포함하여 61개 은행이 IBRA의 구조조정 프로그램하에 있다. 그리고 13개 BTO 은행 중에서 4개 은행은 자본 재구축을 끝냈으며, 7개 은행은 기존의 BTO 은행과 합병할 예정이고, 나머지 2개 은행은 매각을 위해 자본 재구축중에 있다.

[그림 1] IBRA의 은행구조조정 프로그램



9) 다만 다음과 같은 부채는 보증하지 않았다. ① 주식 대여 및 부수적인 대여, ② 입증할 수 없는 부채, ③ 이사회 또는 위원회 및 관계자에 대한 부채, ④ 변칙적인 은행 관행에 의해 발생한 부채, ⑤ 당좌예금, 저축예금, 정기예금, 당좌, 대부예금, 시장이자율을 초과하는 다른 증권과 관련한 부채, ⑥ 60일 만기일 내에 적법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청구

10) IBRA는 은행 자본재구축 프로그램에 참여시킬 은행을 확정하기 위해서 매우 엄격한 국제기준에 따라 각 은행의 재무상태를 평가하였다. IBRA는 CAR이 4% 이상인 은행을 category A 은행으로 분류하였으며, 정부의 간섭 없이 영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였다. CAR 이 -25%에서 4% 사

IBRA가 관리하고 있는 부실자산은 그 자산의 원천에 따라 세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주주손익분담제와 관련한 지주회사(holding company)의 자산과 기업부채의 출자전환에 따른 기업자산이다. IBRA는 BBO, BBKU 및 BTO 은행의 지배주주들이 법적인 대출한도를 위반함으로써 유발한 채무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였는데, 지배주주들이 충분한 현금이 없는 경우 유동자산 및 기업 등의 주식을 받았다. IBRA는 이러한 자산을 관리할 지주회사를 설립하였으며 이전의 은행 지배주주들과 협조하여 자산의 가치를 극대화하여 이를 매각한다. IBRA는 BTO 은행 및 BBO 은행의 지배주주로부터 112조 루피아에 상당하는 자산을

〈표 8〉 인도네시아 은행부분의 구조조정

		IBRA 구조조정 내용	현재 상황
건전은행	74개 category A 은행	· 구조조정 안함	-
	7개 자본재구성 완료 은행	· 자본재구축 · category 5 부채 이전 · 2년내 주주의 손익분담	· 완료 · 완료 · 진행중
BOT 은행	category I, 4개 은행	· 자본재구축 · category 5 부채 이전 · 주주의 손익분담 · 부채이전	· 완료 · 완료 · 완료 · 진행중
	category II, 7개 은행	· category 5 부채 이전 · 구조조정/합병 · 주주의 손익분담	· 진행중 · 진행중 · 진행중
	category III, 2개 은행	· 자본재구축	· 투자자와 투자협정체결
비적격은행	category I, 16개 은행	· Bank Indonesia에 의한 청산 · 주주의 손익분담	· 시작단계
	category II, 10개 은행	· 모든 자산의 이전 · 주주의 손익분담	· 완료 · 완료
	category III, 38개 은행	· 모든 자산의 이전 · 주주의 손익분담	· 진행중 · 진행중
국책은행	7개 은행	· 합병	· 4개 은행은 합병하여 Bank Mandiri가 될 예정임. · 나머지 3개 은행은 자본재구성 할 예정임.

자료: IBRA.

이전 받았으며 BBKU 은행의 지배주주로부터 25조 루피아에 상당하는 자산을 이전 받았다.

둘째, IBRA에 의해 자본 재구축이 이루어진 은행의 주식이다. 계속적인 영업이 허용된 category B 은행 중에서 1998년 말까지 지배주주가 자본 재구축 비용의 최소 20%를 부담하려는 의사가 있는 경우 은행 구조조정 프로그램에의 참여가 허용되었다. IBRA는 BTO 은행, 자본 재구축이 완료된 은행, 국책은행에 393조 루피아에 달하는 공적자금을 자본금 증자를 위해 투여하였다.

셋째, BBO 및 BBKU 은행은 IBRA에 모든 자산을 이전하도록 하였으며,

현재까지 폐쇄된 48개의 은행을 포함하여 61개 은행이 IBRA의 구조조정 프로그램하에 있고 13개 BTO 은행 중에서 4개 은행은 자본 재구축을 끝냈으며, 7개 은행은 기존의 BTO 은행과 합병할 예정이고, 나머지 2개 은행은 매각을 위해 자본 재구축중에 있다.

이의 은행은 category B 은행으로 분류되었으며, IBRA에 인수되거나 은행 자본재구축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했다. 1999년 3월 13일에 9개의 은행에 대해 은행 자본재구축 프로그램에의 참여를 허용하였다. CAR이 -25% 아래의 은행은 category C 은행으로 분류되었으며, 자구 노력에 의해 CAR을 4% 이상으로 자본재구축을 하지 못하는 한 이러한 은행들은 폐쇄되었다. 영업이 중지된 은행의 모든 자산과 BTO 은행 및 자본재구축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은행의 category 5 부실채권은 IBRA에 이전하도록 하였다.

1998년 8월까지
은행부문에 제공된
정부의 현금지원은
144조 루피아에 달했으며,
은행 자본재구축 및
채무보증 프로그램 등을
위해 643조 3,010억
루피아의 증권을 발행했다.

BTO 은행, 자본 재구축이 완료된 은행, IBRA에 의해 자본 재구축이 완료된 국
책은행은 category 5 채권만을 IBRA에 이전하도록 하였다. 은행이 부실채권을
IBRA에 이전하도록 함으로써 자산의 가치가 더 하락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이
다. 부실채권의 구조조정이 완성되면 그 부실채권은 다시 은행에 이전될 것이다.
이에 따라 10개 BBO 은행, 7개의 국책은행, 4개의 BTO 은행, 7개의 자본 재구
축 은행이 대출포트폴리오를 IBRA에 이전하였으며, BBKU 은행과 2개의 새로
운 BTO 은행은 대출 포트폴리오를 이전하고 있는 중이다. IBRA는 은행으로부터
234조 루피아에 해당하는 대출을 이전 받았다.

채무보증 프로그램과 은행회생 프로그램의 비용은 정부가 부담한다. 1998년 8
월까지 은행부문에 제공된 정부의 현금지원은 144조 루피아에 달했으며, 은행
자본재구축 및 채무보증 프로그램 등을 위해 643조 3,010억 루피아의 증권을 발
행했다.

〈표 9〉 인도네시아 은행부문 구조조정 프로그램하의 자산

(단위: 10억 루피아, %)

IBRA 통제하의 자산	이전가	추정시장가	예상 회수율
1. 주주손익분담에 의해 받은 기업주식			
BBO/BTO-1	111,645	64,543	58
BBKU	25,000	12,500	50
2. 자본재구축은행 및 BTO은행에의 투자			
BTO-1	70,162	21,476	31
BTO-2	21,000	721	3
BTO-3	13,155	3,253	25
자본재구축은행	22,125	15,932	72
국책은행	267,000	11,600	4
3. 대출 및 기타은행자산			
a. categories 1~4;	-	17,994	45
b. categories 5:			
자본재구축은행(COE)	-	-	-
Non-COE(BTO-1)	-	13,359	37
Non-COE(BTO-2 & 3)	-	3,041	37
Non-COE(BBO/BBKU)	-	8,035	37
Non-COE(State Bank)	-	33,855	31
c. 기타은행자산	3,175	1,588	50
합 계	533,263	207,897	

자료: IBRA.

이와 같이 막대하게 투여된 공적자금의 회수를 극대화하고 정부예산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IBRA는 자산매각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자산의 매각과 관련한 부서는 AMI(Asset Management Investment)와 AMC(Asset Management Credit)이다. AMI는 투자의 형태로 가지고 있는 자산, 은행 또는 기업의 정부 출자분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한다. AMI는 2000년 3월까지 9조

막대하게 투여된
공적자금의 회수를
극대화하고 정부예산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IBRA는 자산매각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표 10〉 IBRA의 부실자산 매각 현황

(단위: 10억 루피아)

	1999 6월까지	1999 7~9월	1999 10~12월	2000 1월	2000 2월	2000 3월	합계
AMI							
은행							
Banks Danamon	-	-	-	-	-	-	-
BCA	-	-	-	-	-	3,000	3,000
BII	-	2,086	-	-	-	-	2,086
Lippobank	-	2,942	-	-	-	-	2,942
Bali	-	900	-	-	-	-	900
Universal	-	488	-	-	-	-	488
Bukopin	-	10	-	-	-	-	10
Patriot	-	5	-	-	-	-	5
Prima Express	-	3	-	-	-	-	3
소계	-	6,434	-	-	-	3,000	9,434
기업							
Statomer	0	120	-	-	-	-	120
Indofood	-	368	-	-	-	-	368
PIPI	34	-	-	-	-	-	34
Beechcraft Planes	25	-	-	-	-	-	25
Indo American Ceramics	47	-	-	-	-	-	47
First Pacific	-	-	-	-	-	1,500	1,500
Astra International	-	-	-	-	2,000	-	2,000
소계	106	488	-	-	2,000	1,500	4,094
AMI 합계	106	6,922	-	-	2,000	4,500	13,528
AMC							
대출회수	775	825	1,157	-	-	1,161	3,918
채권매각	-	-	363	-	-	851	1,214
비주요자산 매각	106	45	84	-	-	77	312
AMC 합계	881	870	1,604	-	-	2,089	5,444
합계	987	7,792	1,604	-	2,000	6,589	18,972

자료: IBRA

자산을 매각하는
방법으로는 투자자에게
기업주식을 매각하는
방법, 증권시장에
상장하는 방법, 채권 및
금융자산을 매각하는
방법, 기업의 수입을
증권화하는 방법 등을
사용하거나
사용할 계획이다.

4,340억 루피아의 은행자산을 처분했으며, 4조 940억 루피아의 기업자산을 처분하였다. AMC는 대출과 IBRA에 이전된 비주요자산의 관리와 구조조정 업무를 수행한다. AMC는 2000년 3월까지 5조 4,440억 루피아의 대출 및 비주요자산을 처분하였다.

자산을 매각하는 방법으로는 투자자에게 기업주식을 매각하는 방법, 증권시장에 상장하는 방법, 채권 및 금융자산을 매각하는 방법, 기업의 수입을 증권화하는 방법 등을 사용하거나 사용할 계획이다.

IBRA는 자산의 매각을 통해 2000~2001 회계연도에 37조 8,000억 루피아, 2001~2002 회계연도에 52조 2,000억 루피아, 2002~2003 회계연도에 44조 6,000억 루피아, 2003~2004 회계연도에 36조 4,000억 루피아를 회수할 계획으로 있다.

〈표 11〉 IBRA의 자산 매각프로그램

(단위: 조 루피아, %)

회계연도 ¹⁾	1999~ 2000	2000~ 2001	2001~ 2002	2002~ 2003	2003~ 2004
정부채 이자부담	34.0	50.8	42.8	42.0	42.5
AMI					
은행자산 매각	9.4	3.8	7.8	6.9	7.7
기업자산 매각	4.1	12.6	14.4	14.7	20.6
AMC					
수입 이자	2.1	4.2	2.8	1.3	0.3
대출회수	1.8	1.8	1.7	1.8	0.8
채권매각	1.5	4.6	10.8	9.8	5.7
출자전환한 정부채권					
인덱스(index)	-	-	-	-	-
변동이자율	-	10.8	14.6	10.1	1.3
고정이자율	-	-	-	-	-
IBRA 투자 예상 회수금액	18.9	37.8	52.2	44.6	36.4
현금 회수액	17.0	27.0	37.5	34.5	35.2
출자전환한 정부채권	-	10.8	14.6	10.1	1.3
국가 채무	610.6	648.2	645.4	647.8	659.7
예산상 순부담액	17.0	23.8	5.3	7.5	7.3
GDP 대비 %	1.5	1.9	0.4	0.5	0.4

주: 1) 회계연도는 각 연도 4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임.

자료: IBRA.

IV. 말레이시아

1. 경제위기의 발생원인과 진행과정

1997년 태국과 인도네시아의 경제위기는 말레이시아에도 파급되었다. 그러나 말레이시아의 경우에는 다른 동남아 국가들과 달리 외환유동성 문제는 크지 않았다. 말레이시아의 외환보유고는 1997년 말에 217억 달러를 기록하여 3개월 이상의 수입을 충당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 또한 외채의 규모와 만기구조에 있어서도 다른 동남아 국가들에 비해 양호한 편이었으며, 환율도 상승하고 있었으나 다른 동남아 국가들에 비해 훨씬 안정적이었다.

경제위기의 첫 번째 여파는 부동산시장에 미쳤다. 경제위기를 맞기 전인 1996년 한해 동안 상업지역과 사무실빌딩의 건설을 위한 대출이 전년도에 비해 51% 증가하였으며, 1997년 말까지 전체 대출의 28%가 부동산으로 흘러 들어갔다. 이런 상황에서 동남아시아의 경제위기가 말레이시아로 파급되자 사무실 및 아파트의 과잉공급이 부동산 가격의 폭락을 유발하였다.

두 번째 여파는 주식시장에 미쳤다. 말레이시아의 주식시장은 경제규모에 비해 매우 규모가 큰 시장이다. 경제위기를 맞기 전 말레이시아의 주식시장은 GDP의 300% 규모로서 주요 OECD 국가들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1997년 말까지 은행 대출의 9.3% 정도가 주식시장으로 흘러들어 간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제조업에 대한 대출은 총대출액의 9%에 불과했던 반면, 금융기관이나 지주회사 등에 대한 대출은 총대출액의 35%나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동남아시아의 경제위기가 말레이시아로 파급되자 주가는 폭락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부동산 가격 및 주가의 폭락으로 인해 금융기관의 부실문제가 확산 되면서 말레이시아는 국내 채무문제로 인해 신용위기를 겪게 되었다. 경제위기에 대응하여 다른 국가들은 IMF의 구제금융을 받고 IMF의 프로그램을 따랐으나 말레이시아 정부는 독자적인 노선을 걷기로 결정하였다. 말레이시아 정부가 IMF의 프로그램을 따르지 않았던 이유는 몇 가지로 추정된다. 우선 앞서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전후 아시아의 고도성장에 대해 긍지를 가지고 있던 마하티르 수상의 철학이 크게 작용하였다. 그는 동남아의 경제위기가 유태인을 중심으로 한 국제 투기 자본가들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인식하였다. 또한 말레이시아는 경제위기를

말레이시아의 경우에는 다른 동남아 국가들과 달리 외환유동성 문제는 크지 않았다. 말레이시아의 외환보유고는 1997년 말에 217억 달러를 기록하여 3개월 이상의 수입을 충당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

대외 채무문제를
해결하려는 IMF의
프로그램은 외국인
투자자의 신뢰 회복보다는
국내 부채가 많은 기업을
살리기 위해 경기 부양이
우선 필요했던
말레이시아에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었다.

겪었던 다른 동남아 국가들과 달리 국내 채무문제가 대외 채무문제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었다. 주로 대외 채무문제를 해결하려는 IMF의 프로그램은 외국인 투자자의 신뢰 회복보다는 국내 부채가 많은 기업을 살리기 위해 경기 부양이 우선 필요했던 말레이시아에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었다. 마지막으로 말레이시아 정부는 불완전시장의 시정과 투명성을 강조하는 IMF 프로그램이 도입될 경우 인종간의 부, 교육지원, 기타 정부의 지원 등의 재분배 문제가 필연적으로 사회문제가 되어 혼란을 야기할 것을 우려하였던 것으로 보여진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처음에는 IMF의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긴축정책을 실시하였다. 1997년 9월 대형 국책 프로젝트의 추진을 중단하고 12월에는 경제 긴급 대책을 수립하여 1998년도 예산을 18%나 감축하는 등의 긴축정책을 발표하였다. 재정지출과 통화증가율이 억제되자 시중금리는 5~6% 수준에서 11~12% 수준으로 상승하고 기업의 신용 경색은 곧 각 부문에서 생산활동을 격감시켰다. 그 결과 1998년 3월 이후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를 기록하게 되었고 링깃화의 평가절하와 주가지수의 폭락을 경험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말레이시아 정부는 국내경기 부양과 금리 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1998년 7월 국가경제회복계획(National Economic Recovery Plan)을 발표하여 본격적으로 독자적 정책을 시행하게 되었다. 그리고 9월에는 일련의 강력한 자본통제 정책을 실시하였다. 국내 물가와 링깃화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변동환율제에서 고정환율제로 환율정책을 바꾸고 링깃화의 환전과 대외거래를 제한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즉, 그 동안 자유로웠던 대외계정간의 모든 이체는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였으며, 해외송금은 수출입결제를 제외하고 10만 링깃까지 가능하던 것이 1만 링깃으로 제한했으며, 현지 증권에 투자한 외국인에 대해 1년 이내 매도를 금지하였다. 이와 아울러 중앙은행의 상업은행 대출이자율을 11%에서 8%로 인하하였으며, 은행의 지불준비율을 6%에서 4%로 조정하는 등 금리인하정책을 발표하였다.

정부의 이러한 일련의 조치로 1998년 3/4분기 이후 외환보유고가 증가하고 4/4분기 이후 수출이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는 더욱 악화되고 있었다. 경제성장률이 1/4분기에 -2.8%, 2/4분기에 -6.8%, 3/4분기에 -8.6%, 그리고 4/4분기에 -9%로 점점 하락하고 있었다. 이는 자본통제조치 이후 외국인투자자의 거의 중단되었고 국내 은행들마저 기업 부실화를 우려하여 대출을 꺼려왔기 때문

이었다. 자본통제가 장기적으로는 말레이시아 경제에 해롭다는 의견이 대두되면서 정부는 1999년 2월 15일 외국인투자자금의 1년 강제유보 대신에 자본유출세(exit tax)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자본통제를 완화했다. 이러한 완화조치는 동년 4월과 9월에 더욱 확대되어 외국인투자 중 상당부분에 대하여 유출세도 물지 않고 해외로 송금할 수 있게 되었다.

정부의 이러한 조치에 힘입어 경제성장률은 1999년 2/4분기 4.1%의 흑자로 전환되었으며 이후 대미 수출의 증가와 아시아지역의 경제 호전으로 <표 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9년에는 5.6%의 경제성장률을 이룩했다.

〈표 12〉 말레이시아의 경제지표

(단위: 십억달러, %)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GDP 성장률	8.7	8.5	8.3	9.2	9.6	8.2	7.0	-7.5	5.6
인플레이션율	4.4	4.7	3.6	3.7	3.4	3.8	2.8	5.3	2.8
환율(Ringgit/US\$)	2.72	2.61	2.70	2.56	2.54	2.52	3.88	3.80	3.80
무역수지	0.39	3.15	3.01	1.58	-3.67	-0.50	4.60	3.50	19.03
수출	33.71	39.83	46.22	56.91	68.51	75.00	78.10	81.00	n.a.
수입	33.32	36.68	43.21	55.33	72.18	75.50	73.50	77.50	n.a.
경상수지	-4.18	-2.17	-2.81	-4.15	-7.30	-6.20	-5.00	-1.50	n.a.
GDP대비	-8.9	-3.7	-4.4	-5.9	-7.8	-6.4	-5.0	-1.9	n.a.
외채	17.81	19.96	23.30	24.77	30.60	33.90	31.00	33.20	n.a.
GDP대비	39.9	36.4	38.7	36.9	38.5	40.1	31.2	33.0	n.a.

자료: Thomson Bankwatch Inc.
Bank Negara Malaysia.

2. 부실채권의 정리과정

말레이시아의 부실채권¹¹⁾ 규모는 <표 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9년 474억 6,000만 링깃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부실채권의 비율을 금융기관별로 비교해 보면, 머천트 뱅크가 12.3%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이 파이낸스회사로 8.6%이었고 상업은행이 가장 낮은 5.7%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1999년 전체 여신 대비 부실채권의 비율은 6.6%로 동남아의 다른 국가들에 비하면 아주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자본통제가
장기적으로는 말레이시아
경제에 해롭다는 의견이
대두되면서 정부는
1999년 2월 15일 외국인
투자자금의 1년 강제유보
대신에 자본유출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자본통제를 완화했다.**

11) 원금 또는 이자가 6개월 이상 연체되고 있는 대출채권을 말한다.

말레이시아의
1999년 전체 여신 대비
부실채권의 비율은
6.6%로 동남아의
다른 국가들에 비하면
아주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표 13〉 말레이시아의 부실채권 규모

(단위: 백만 링깃)

	1997	1998	1999
상업은행	14,159 (3.2)	32,086 (5.9)	30,402 (5.7)
머천트뱅크	1,096 (3.5)	3,888 (10.9)	3,487 (12.3)
파이낸스회사	9,798 (6.5)	16,092 (11.9)	13,571 (8.6)
합계	25,053 (4.1)	52,066 (7.5)	47,460 (6.6)

주: () 안은 여신 대비 NPL 비율임.
자료: Danaharta.

아시아지역의 금융위기가 확산되자 말레이시아 정부는 1998년 1월 국가경제 행동평의회(National Economic Action Council, NEAC)를 구성하고 국가경제 회복계획(National Economic Recovery Plan, NERP) 수립에 착수했다. NEAC는 금융위기의 본질이 금융권이 안고 있는 거액의 부실채권에 있음을 인식하고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분리 운영할 기관과 금융기관의 취약한 자본구조를 확충해 줄 기관의 설치를 권고하게 되었다. Danaharta(Pengurusan Danaharta Nasional Berhad)는 이렇게 해서 Companies Act 1965에 의해 1998년 6월 설립되었다.

Danaharta의 임무는 은행권으로부터 부실채권을 제거하고 취득한 자산의 회복가치를 극대화하는 것이다. 즉, Danaharta는 금융기관이 안고 있는 부실채권을 매입하고 관리함으로써 금융기관이 여신활동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고, 은행은 Danaharta에 자산을 매각함으로써 부실채권을 정상적으로 협상된 가격의 채권이나 현금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이다. Danaharta는 은행으로부터 부실채권을 매입하면 채무자와의 협상을 통해 부채상환계획을 수정하거나 부채의 출자전환을 하게 된다. Danaharta가 부실채권을 매입하더라도 담보물은 대출에 대해 전과 동일한 조건 그대로 채무자의 명의로 남아 있고 Danaharta는 은행이 가졌던 것과 동일한 권리를 갖는다.

Danaharta는 금융권으로부터 부실채권을 매입하는 대가로 정부보증증권이나 현금을 금융기관에 제공한다. 동 증권은 최초 5년채로 발행되며, 그 이후

Danaharta의 재량에 의하여 다음 5년 동안 연장을 선택할 수 있는 형태로 발행되고 있다. 또한 Danaharta가 자산을 처분함으로써 매입비용을 초과하는 이익을 얻게 되면 그 이익은 은행과 Danaharta가 80 대 20의 비율로 나누게 된다.

Danaharta는 1999년 말까지 455억 2,100만 링깃에 달하는 부실채권을 관리하고 있다. 그 중에서 191억 2,700만 링깃에 달하는 부실채권은 56% 정도 할인된 가격으로 매입하였다. 부실채권을 매입하는 자금은 Danaharta가 액면가로 108억 1,200만 링깃에 달하는 채권을 발행하여 조달하였다. 그리고 Danaharta는 263억 9,400만 링깃에 달하는 부실채권을 매입대금의 지급 없이 단순히 인수하여 관리하고 있다. 이 외에도 1999년 말 기준으로 72억 9,000만 링깃에 달하는 부실채권은 금융기관과 협상중에 있으며, 17억 9,400만 링깃에 달하는 부실채권은 협상이 끝난 상태이다.

〈표 14〉 말레이시아의 부실채권 인수 현황

(단위: 10억 링깃, 개)

	금 액	계좌수
매 수	19.127	770
단순인수	26.394	1,896
소 계	45.521	2,666
미 결정	7.290	274
결 정	1.794	111
합 계	54.605	3,051

자료: Danaharta.

Danaharta가 관리하고 있는 부실채권을 금융기관 유형별로 살펴보면 대부분 Sime Bank 그룹, BBMB 그룹, 그리고 상업은행으로부터 온 것임을 알 수 있다. Danaharta는 Sime Bank 그룹과 BBMB 그룹으로부터 각각 152억 6,500만 링깃과 111억 2,900만 링깃에 해당하는 부실채권을 인수하였으며, 상업은행으로부터는 110억 6,200만 링깃에 해당하는 부실채권을 인수하였다.

은행부문으로부터의 부실채권 인수는 373억 3,800만 링깃으로서 이는 은행 전체 부실채권의 42% 정도의 규모이다. 그 결과 2000년 3월 말 현재 6개월 이상 연체기준으로 총대출 대비 부실채권의 비중은 6.5%에 머물고 있다.

Danaharta의 부실채권정리는 매각보다는 관리에 역점을 두고 있다.

NEAC는

금융위기의 본질이

금융권이 안고 있는

거액의 부실채권에

있음을 인식하고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분리 운영할 기관과

금융기관의 취약한

자본구조를 확충해 줄

기관의 설치를

권고하게 되었다.

Danaharta는

이렇게 해서 설립되었다.

Danaharta의
부실채권정리는
매각보다는 관리에
역점을 두고 있다.

〈표 15〉 Danaharta의 부실채권 포트폴리오

(단위: 10억 링깃)

종 류	금 액
상업은행	11.062
파이낸스 회사	3.939
머천트 बैं크	3.024
개발금융기관	0.936
역외은행	0.123
기타	0.043
Sime Bank 그룹	15.265
BBMB 그룹	11.129

자료: Danaharta.

Danaharta가 부실채권을 인수하면 채권을 분석하여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 되면 담보물을 처분하게 된다. 채권의 회생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Danaharta는 채무기업 자체의 경영능력과 업종의 장래성 등 두 가지 측면에서 분석한다. 두 가지 측면이 모두 건전한 기업은 채무조정의 대상이 되고 나머지 기업은 자산관리의 대상이 된다. 특히 경영능력과 장래성이 모두 취약하면 바로 경매처분대상이 된다.

회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기업에 대하여는 즉시 담보물 처분에 들어간다. Danaharta는 법원의 경매절차 없이 직접 담보물을 인수하고 처분할 수 있다. Danaharta는 1999년 11월 제1차 자산매각입찰을 실시했다. 매각대상은 44개 물건에 예정가격이 1억 2,300만 링깃이었으나, 입찰 결과 24개 물건을 1,649만 링깃에 매각하는 데 그쳤다. 1999년 12월에 실시된 제2차 자산매각입찰에서는 실적이 상당히 좋아졌다. 매각대상은 123개 물건에 예정가격은 2억 7,643만 링깃이었으며, 입찰결과 69개 물건을 1억 643만 링깃에 매각하였다.

Danaharta는 1999년 8월에 입찰을 실시하여 외화표시 채권(loan)을 매각하였다. 이 입찰에서는 15건 1억 4,245만 달러의 채권 중에서 13건이 매각되어 55.3%의 회수율을 보였다. 2000년 2월에 실시된 두 번째 입찰에서는 28건 2억 5,180만 달러의 채권 중에서 25건이 매각되어 97.2%의 회수율을 보였다.

V. 시사점

최근 경제위기를 맞았던 아시아 국가들은 기업 및 금융기관의 부실이 누적되어 금융산업이 구조적으로 매우 취약했다는 점, 그리고 세계경제의 흐름이 상품교역에서 자본거래로 확장되는 과정에서 자본이동의 자유화, 헤지펀드의 활동 급증 등과 같은 새로운 조류에 대해 제대로 적응하지 못했다는 점 등의 공통점이 있었다. 이에 따라 각국은 부실금융기관 및 부실채권의 과감한 정리만이 경제위기 탈출의 유일한 대안임을 인식하고 금융부문 개혁 등의 각종 조치를 시행하였다. 결국 각국의 경제위기 극복의 성패는 부실금융기관 및 부실채권의 정리 내용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태국은 FRA를 통해 폐쇄된 파이낸스회사의 부실채권을 가능한 빨리 처리하는 등 금융기관의 과감한 구조조정 조치를 통한 경제개혁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태국은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에 있어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보다는 분권화된 방식을 선택하였다. 파이낸스회사의 부실채권 규모보다 훨씬 큰 은행의 부실채권을 정부가 개입하지 않고 은행 스스로 해결하도록 내버려 둔 것이다. 향후 태국의 각 은행이 부실채권을 제대로 처리하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금융기관 전체의 구조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는 확실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인도네시아는 IBRA를 설립하여 상업은행의 채무를 보장해 주고 금융기관 및 기업의 구조조정을 시행하고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처리하는 등 금융구조조정을 강력히 추진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IBRA가 막대한 규모의 부실채권을 인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은행권의 부실채권이 총여신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공적자금의 조달이 어렵고 또한 그 조달 방식도 불확실하다는 점, 그리고 금융구조조정의 주체인 IBRA의 운영에 있어서조차 투명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이 큰 문제로 남아 있다. 인도네시아의 연고자본주의(crony capitalism)에 따른 투명성 부족이 사회 전체에 큰 먹구름으로 작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경제 회복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말레이시아는 태국과 인도네시아와는 달리 IMF의 처방을 따르지 않았다. IMF 형과 말레이시아형은 대응방법은 달랐으나 경제성과는 비슷해서 어느 정책이 우월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형편이다. 그러나 말레이시아는 일방적으로 자본통제정책을 시행함으로써 국제적인 신뢰가 저하되고 외국인 직접투자가 감소하는

최근 경제위기를
맞았던 아시아 국가들은
금융산업이 구조적으로
매우 취약했다는 점,
자본이동의 자유화,
헤지펀드의 활동 급증 등과
같은 새로운 조류에 대해
제대로 적응하지
못했다는 점 등의
공통점이 있었다.

정부가 문제발생 초기에 과단성 있는 처방을 내리지 못하고 부실금융기관의 구조조정에 미온적이고 관대할수록 금융부실화를 악화시켰다는 사실을 미국과 일본 등의 선진국 사례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등의 문제를 겪고 있다. 또한 말레이시아는 경기 부양에 상대적으로 높은 관심을 가지면서 금융구조조정은 오히려 완만하게 진행되고 있는 편이다.

〈표 16〉 4개 아시아 국가들의 정책비교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한국
최근 NPL 비율	38.5% (1999. 12)	6.6% (1998. 12)	57.0% (1999. 12)	8.2% (1999. 9)
IMF 자금	172억 달러	해당없음	423억 달러	570억 달러
폐쇄, 합병, 또는 국영화된 금융기관	56개 금융기관 폐쇄, 2개 은행 국유화	2개 은행 우량은행에 합병	66개 은행 폐쇄, 4개 국책은행 합병, 14개 은행 IBRA에 인수됨.	5개 은행 폐쇄, 2개 은행 국유화
내 용	FRA가 폐쇄은행의 자산을 처분하고, AMC는 마지막 입찰자로서의 역할을 하며, 10개 은행이 직접 AMC를 설립 함.	Danamodal이 은행의 자본재구성을 하고, Danaharta는 NPC를 제거하며, CDRC는 기업 부채구조조정을 촉진함.	IBRA이 은행자본 재구성 및 NPL 처리를 포함한 은행부문의 구조조정 및 회생을 지휘함.	KDIC가 은행자본 재구성을 하고, KAMCO가 NPL을 제거함.

자료: Danaharta.

각국의 경제위기 극복방안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부실금융기관 및 부실채권의 처리는 초기에 과감히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늦출 경우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고통과 비용이 더욱 증가하게 된다. 경제위기를 겪은 동남아 국가들 모두가 기업의 부실과 이로 인한 금융기관의 부실을 그대로 방치해 둔 것이 사태를 더욱 악화시켰던 것이다. 정부가 문제발생 초기에 과단성 있는 처방을 내리지 못하고 부실금융기관의 구조조정에 미온적이고 관대할수록 금융부실화를 악화시켰다는 사실을 미국과 일본 등의 선진국 사례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또한 부실금융기관 및 부실채권의 처리는 그 과정에서 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성공을 거둘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정부가 무리하게 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경제운용에 왜곡현상을 낳고 시장의 자율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해당 금융기관에 맡겨둔 태국의 경우에서도

볼 수 있듯이 정부가 직접 나서는 국가들에 비해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이 지연되고 그 강도도 미약할 수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금융구조조정 정책은 경제주체들이 신뢰할 수 있어야 하며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 인도네시아의 경우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금융구조조정과 관련하여 투명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는 금융구조조정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고통 분담에 의거한 투명하고도 엄격한 기준에 의해 금융구조조정 정책이 수립되어야 하며, 일단 수립된 정책은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일관되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모든 경제주체들이 합리적인 행동을 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불확실성이 조기에 제거될 수 있을 것이다. **KIP**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해당 금융기관에 맡겨둔
태국의 경우에서도
볼 수 있듯이
정부가 직접 나서는
국가들에 비해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이
지연되고 그 강도도
미약할 수밖에 없다.**

주요국의 조세제도

- 캐나다의 조세제도(II) -

李 章 揆 초청연구위원(cklee57@kipf.re.kr)

I. 법인소득세

캐나다에서 법인소득세는 연방정부와 10개의 州 정부 그리고 2개의 準州 정부(territories)에 의하여 부과되고 있다. 연방정부의 법인소득세는 개인소득세와 마찬가지로 소득세법에 근거하여 부과된다. 소득세법에 근거가 없을 경우에는 일반적인 회계원칙(GAAP)을 따른다. 일부 소득에 대해서는 공제제도가 활용되고 있으며, 정책목표를 위하여 조세유인제도가 활용되기도 한다. 1998~1999년 회계연도에서 법인세는 연방정부 세수 중에서 13.9%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캐나다의 주정부 및 준주정부 역시 법인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연방정부가 이들 주정부 및 준주정부를 대신하여 州법인소득세를 징수하고 있다. 캐나다에서 법인은 해당 주정부의 법인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만약 법인이 1개 이상의 주에 위치하고 있으면 과세소득은 공식에 따라 각 주정부에 배분된다.

1. 납세의무자

법인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법인으로 거주자법인과 비거주자법인으로 구분되며 이에 대한 과세는 회사유형에 따라 다르다. 과세목적상 캐나다 법인은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의 두 종류로 다시 나누어지고 비상장법인은 다시 캐나다인이 지배하는 비상장법인(Canadian controlled Private Corporation: CCPC)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누어진다.

캐나다의 거주자법인은 전세계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과세되는 반면 비거주자법인은 캐나다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되기 때문에 거주·비거주자 여부를 결정하

캐나다의 거주자법인은

전세계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과세되는 반면

비거주자법인은 캐나다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되기 때문에

거주·비거주자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중요하다.

는 것은 중요하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상장 법인이란 캐나다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을 말하지만 주식소유분산과 관련하여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는 비상장법인도 상장법인으로 취급받을 수 있다. 또한 상장법인의 자회사는 비상장법인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상장법인과 동일한 취급을 받게 된다.

원칙적으로 중앙관리와 통제가 캐나다에서 이루어지는 법인을 거주자로 하는데 실제로는 캐나다에서 법인등록을 마친 거의 모든 법인이 캐나다거주자가 되고 있다.

2. 과세대상소득

국제기준과 비교하여 볼 때 캐나다 법인소득세의 세원은 상당히 포괄적이라 할 수 있다. 캐나다 소득세법상 법인에 대한 과세소득은 사업 또는 자산으로부터의 소득과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자본이득을 포함한다.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는 이자, 배당소득, 임차료 및 로열티 등을 포함한다. 일반적으로 소득은 발생주의 원칙에 의해 계산

되나 자본이득·손실은 실현되었을 때 과세된다.

가. 사업연도

조세 목적상 기업이 채택하는 사업연도는 역년(calender year)일 필요는 없다. 그러나 조세 목적상 사업연도는 53주를 초과할 수 없다. 이전에 접수된 사업연도의 변경을 위해서는 과세당국의 허가가 필요하다.

나. 사업소득

조세 목적상 '사업 및 자산으로부터의 법인 소득'이라 함은 사업 및 자산원천으로부터 발생한 소득(당기순이익)을 말한다. 당기순이익은 통상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기준(GAAP)과 상법규정에 따라 결정되지만 특정 법령 규정에 의하여 이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다. 자본이득

고정자산의 판매 및 교환으로 인해 실현된 이득의 3분의 2(2000년부터 시행)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고정자산의 판매라고 생각되지만 특정 납세자에게는 정상적인 사업상의 거래일 경우 이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손실은 전액 과세표준에 포함되거나 공제될 수 있다.

한편 자본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본이득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하다. 단, 적격 소기업에 대한 채권이나 정상가격으로 처분한 주식으로부터 발생한 자본손실에 대해서는 예외가 인정된다. 이러한 손실은 제한없이 다른

소득과 상계될 수 있다.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자본이득을 2000년부터 4분의 3에서 3분의 2로 축소한 것은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 폭을 하향 조정함으로써 기업으로 하여금 사업상 필요한 자본을 용이하게 취득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라.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법인에 의해 수령되거나 수령 가능하게 된 이자소득은 법인의 사업 혹은 자산으로부터의 소득에 포함된다.

그리고 주식배당의 경우 과세대상인 다른 캐나다 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배당소득은 과세표준을 산출할 때 일반적으로 공제될 수 있다. 그러나 10% 미만의 지분을 가진 법인에 투자하여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캐나다인 지배 비상장법인(CCPC) 및 특수관계인 개인에 의해 지배되는 상장법인은 1/3%의 특별세(환급가능 배당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특별세의 목적은 이러한 배당소득의 축적으로 개별주식보유자의 납세연기(tax deferrals)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 밖에도 캐나다인 지배 비상장법인(CCPC)은 총투자소득에 대하여 6%의 특별부가세(surtax)를 추가적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총투자소득에는 이자소득, 배당소득과 같이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자본이득·손실 및 특정 투자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한다.

한편 환급가능 배당소득세 및 6%의 특별부가세는 모두 과세대상 배당소득이 지급되면 3 캐나다달러 당 1 캐나다달러의 비율로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자본이득을
2000년부터 4분의 3에서 3분의 2로 축소한 것은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 폭을 하향 조정함으로써
기업으로 하여금 사업상 필요한 자본을 용이하게
취득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환급 받을 수 있다.

배당 지급자와 수령자가 모두 거주자일 경우 주식배당은 조세 목적상 현금배당과 동일하게 취급된다. 주식배당금액은 배당 지급으로 인한 회사 불입자본금의 증가액이 된다. 결국 회사간의 배당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체계는 비용을 발생시킨 법인으로부터 금융기관이나 우선주(preferred share) 투자자에게 공제혜택을 이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우선주에 대한 배당은 회사간 배당공제가 적용되지 않고 일반 법인세율에 의해 과세가 이루어진다.

마. 로열티와 서비스요금

법인에 의해 수령된 로열티와 서비스요금은 사업 혹은 자산으로부터의 소득에 포함된다. 로열티가 캐나다인 지배 비상장법인의 투자소득일 경우에는 특별규정이 적용된다.

바.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

캐나다로의 송금 여부와 관계없이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은 캐나다 거주자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소득에 포함된다. 해외자회사로부

**소득 창출을 위해
지불된 합리적인 사업비용은
소득세법상 특별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한
손금에 산입된다.**

터의 배당소득에는 특별규정을 적용한다. 또한 해외에서 지불한 소득세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공제가 허용되고 있다.

3. 손금의 계산

가. 사업비용

소득 창출을 위해 지불된 합리적인 사업비용은 소득세법상 특별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한 손금에 산입된다. 기부금, 접대비, 종업원에 대한 차량비용 등은 일정하고 내에서만 손금산입된다. 자본비용의 손금산입은 명확하게 금지되지만 특별히 그러한 비용의 상각을 허용하는 규정도 있다. 캐나다 법인은 전세계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과세되기 때문에 관련비용도 지역적인 제한없이 전액 손금산입될 수 있다.

나. 감가상각

이익 창출을 목적으로 획득한 토지 이외의 대부분의 자본재는 조세목적으로 감가상각이 가능하며 권리나 프랜차이즈와 같은 특정 무형자산의 경우도 감가상각이 가능하다. 세법

은 감가상각 실시율의 최대한도를 규정하고 있다. 감가상각은 일반적으로 잔액차감방식(declining-balance method)에 의해 결정된다. 규정에 의하여 직선식 상각법(straight-line method)이 적용되는 자산을 제외하면 과세연도 말 해당 자산의 잔액에 감가상각 실시율을 적용하여 감가상각액을 결정한다.

다. 충당금

실제로 결정할 수 있는 채무이거나 특별히 규정되어 있으면 충당금은 일반적으로 조세목적상 손금으로 계산될 수 있다. 예를 들면 대손충당금 및 미실현 이익을 위하여 특별히 인정된 경우에는 손금산입이 허용된다.

라. 연구개발비

캐나다는 연구개발과 관련하여 다른 선진국 못지않은 세제지원을 하고 있다. 캐나다에서 수행된 연구개발과 관련된 거의 모든 경상 및 자본지출에 대하여 즉각적인 손금산입을 허용하는 특별규정이 있다. 혹은 이러한 비용은 무한정 차기이월이 가능하다. 또한 대부분의 과학연구지출은 투자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이 된다.

4. 세율

캐나다에서 연방법인소득세율은 일반기업, 제조·가공업 기업, 소기업(small business)으로 크게 세 종류로 구분되어 적용된다. 캐나다 거주자법인에는 전세계소득에 대해 38%의 일반세율로 연방법인세가 부과되며,

비거주법인에는 캐나다에서 발생한 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동일한 세율의 연방법인세가 부과된다. 그러나 기본세율에 연방정부의 부가세(a federal surtax)가 덧붙여지고, 주정부 세에 대한 경감, 소기업에 대한 혜택, 제조·가공업체 등에 대한 혜택에 의해 세율이 경감될 수도 있다. 그래서 실제로는 법정세율에서

주정부의 법인소득세액을 공제한 후의 세율을 연방법인세율로 설명하는 경우가 많다. 캐나다에서는 주정부에 납부한 법인세의 10%를 연방법인소득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므로 연방법인세율은 28%가 된다. 또 연방법인세에 4%의 부가세가 과세되어 결국 연방법인세의 최고세율은 29.12%가 된다. 제조·가

〈표 1〉 캐나다의 법인세율(1998)

(단위: %)

	일반기업		소기업
	제조업	비제조업	
연방법인세율(법정세율)	38.00	38.00	38.00
주정부 세경감	-10.00	-10.00	-10.00
부가세(4%)	1.12	1.12	1.12
연방법인세율	29.12	29.12	29.12
공제:			
소기업공제	n/a	n/a	-16.00
제조·가공업공제(M&P)	-7.00	n/a	n/a
실효 연방법인세율	22.12	29.12	13.12

자료: PricewaterhouseCoopers, Tax Facts and Figures — for Individuals and Corporations—Canada, 1999.

〈표 2〉 주정부의 법인소득세율(1998)

(단위: %)

	제조업	비제조업	소기업
Alberta	14.5	15.5	6.0
British Columbia	16.5	16.5	9.0 ¹⁾
Manitoba	17.0	17.0	9.0 ¹⁾
New Brunswick	17.0	17.0	7.0
Newfoundland	5.0 ¹⁾	14.0 ¹⁾	5.0 ¹⁾
Nova Scotia	16.0	16.0 ¹⁾	5.0 ¹⁾
Ontario	13.5	15.5	9.17
Prince Edward Island	7.5 ¹⁾	16.0	7.5 ¹⁾
Québec	9.15	9.15/16.71	5.91 ¹⁾
Saskatchewan	10~17	17.0	8.0
Northwest	14.0	14.0	5.0
Yukon	2.5	5.0	2.5/6.0

주: 1) 특정기업에 조세감면기간(tax holidays)을 지정하여 지원하고 있음.

자료: PricewaterhouseCoopers, Tax Facts and Figures — for Individuals and Corporations—Canada, 1999.

**퀘벡주, 온타리오주
그리고 알버타주의 경우는
독자적인 법인소득세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제외한 기타 주정부와 준주정부는
연방정부가 주정부를 대신하여 법인소득세를
징수하도록 하는 조세협정을 체결하였다.**

공업의 캐나다 법인에 대해서는 7%를 감면하여 주기 때문에 실효 연방법인세율은 22.12%를 부과하게 된다. 캐나다인이 지배하는 비상장법인(CCPC)은 <표 1>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16%에 해당하는 액수를 공제할 수 있다.

퀘벡주, 온타리오주 그리고 알버타주의 경우는 독자적인 법인소득세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제외한 기타 주정부와 준주정부는 연방정부가 주정부를 대신하여 법인소득세를 징수하도록 하는 조세협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세액공제, 소득공제 및 세율은 주마다 각각 다르다. <표 2>에서 알 수 있듯이 캐나다의 주정부는 법인소득에 대해서 적어도 2개의 세율을 가지고 있다. 저세율은 소기업에 부과되며 고세율은 그 외의 법인소득에 대하여 부과된다.

5. 세액공제

가. 외국납부세액공제(Foreign Tax Credit)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

과 캐나다에서 외국원천소득에 대해 과세한 세율 중 적은 것을 기준으로 상호주의에 의해 허용된다. 사업소득과 비사업소득에 대해 각 국별로 별도의 규정이 적용된다. 사업소득과 관련하여 미사용된 외국납부세액공제는 3년까지 소급적용되거나 7년까지 이월적용될 수 있다.

나. 소기업공제(Small Business Credit)

캐나다인 지배 비상장법인의 사업소득이 20만 캐나다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대상 소득의 16%만큼의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따라서 세액공제액은 최대 3만 2천 캐나다달러에 달하게 되어 연방 주법인세를 통합한 실효 법인세율은 일반적으로 18.12~22.62% 정도가 된다. 이들 기업은 캐나다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 않고 캐나다인이 최소한 50%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과세대상 자본금액이 1천만 캐나다달러 이상이면 소기업공제액은 축소되며 1,500만 캐나다달러 이상이면 소기업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기업의 성장 및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일부 주정부에서도 캐나다기업에 조세감면기간을 제공하거나 일정 기간 동안 세액공제를 해 주고 있다.

다. 제조·가공업 세액공제

제조·가공업에 종사하고 있는 캐나다 법인은 연방법인세의 세율 7%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연방 혹은 주정부로부터 소기업세액공제를 받는 기업은 제조·가공업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농업, 어업, 목재 벌채업, 천연자원 관련업종 및 건설업에 종사하는 기업은 적용 받지 못한다.

라. 투자세액공제 (Investment Tax Credit; ITC)

캐나다의 낙후지역에서 특정사업과 관련하여 일정 요건을 갖춘 지출(과학연구, 납세자가 사용할 목적의 자산구입 지출비 등을 포함)에 대해서는 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될 수 있다. 여기에서 특정 사업이란 제조·가공업, 원유 및 천연가스 채취업, 광산업, 목재 채취업, 농업, 어업, 곡물 저장업 및 특정 상황에서 시의 발전사업을 포함한다.

투자세액공제는 연방법인세를 경감하는 데 사용될 수도 있으며 일정 상황하에서는 연방 법인세의 제한적인 환급을 받는 데에도 사용될 수 있다. 투자세액공제는 적격자산의 자본비용 혹은 지출비용에 규정비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규정비율은 자산 획득시기, 지출시기 및 자산사용 혹은 지출비가 행사된 지역이 어느 지역인가에 의하여 결정된다. 과세연도 일년에 신청할 수 있는 투자세액공제액에 대한 제한은 없다. 과세연도 일년에 투자세액공제액 총액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3년간의 소급이월 혹은 10년간의 차기이월이 허용된다.

6. 세금납부

법인들은 일반적으로 해당연도 소득세 납부와 관련하여 전년도 실제 납부액을 기준으로 매월 정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월

기업의 성장 및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일부 주정부에서도 캐나다기업에
조세감면기간을 제공하거나
일정 기간 동안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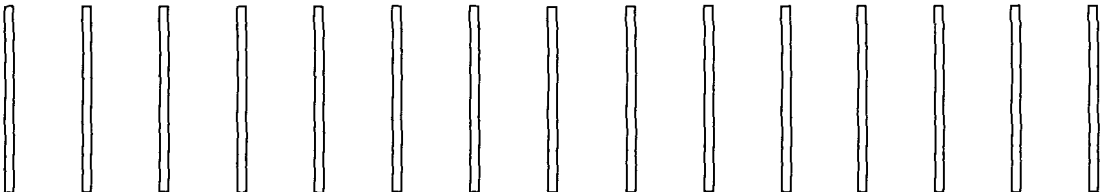
별 납부액은 전년도 법인세액의 12분의 1과 금년도 추정법인세액의 12분의 1 중에서 작은 액수로 결정된다. 법인세의 연체 혹은 미납시 연체이자 및 벌금이 부과된다. 연체세금은 과세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캐나다는 사업연도의 선택에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사업연도의 변경은 과세당국의 허가를 필요로 한다.

참고문헌

- 국세청, 『해외진출에 대한 세무안내』, 1998.
- 라휘문, 『캐나다의 조세제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7.
- 박기백, 『캐나다의 재정』, 한국조세연구원, 1997.
- CCH, *Canadian Master Tax Guide*, 1997.
- Ernst & Young, *Doing Business in Canada*, 1998.
- PricewaterhouseCoopers, *Tax Facts and Figures — for Individuals and Corporations-Canada*, 1999. KPM

정책흐름

1. 2000년 상반기 통합재정수지
2. 신용카드 및 인터넷 등에 의한 국세전자납부 전면 실시
3. 국세채납(결손)자료 신용정보기관 제공제도 시행 효과
4. 1999년도 기금운용 평가결과
5. 2000년도 대형투자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결과



2000년 상반기 통합재정수지

※ 이 자료는 재정경제부 회계제도과에서 2000년 8월 14일에 발표한
「2000년 상반기 통합재정수지」의 전문입니다.

□ 통합재정수지

- 2000년 상반기의 통합재정수지는 13조 2,122억원의 흑자로서 GDP 대비 2.5%를 시현
- 전월의 9조 9,031억원보다 3조 3,091억원이 증가하고, 전년 동기의 -5조 9,651억원의 적자에 비해 큰 규모로 수지 개선
- 이러한 흑자규모는 전년 동기와 대비하여, 조세수입 등이 큰 폭으로 증가한 반면, 경기조절을 위한 긴축으로 지출세가 둔화된 데 기인

(단위 : 억원, %)

	통합재정수지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외	공공기금
2000년 (예산)	-180,900 (-3.4)	148,121	-218,377	-3,658	-106,986
2000년 상반기	132,122 (2.5)	196,202	-85,095	-1,274	22,289
2000.1 ~5월	99,031 (1.9)	177,814	-92,288	-1,021	14,526

주: 2000년 GDP는 524조 3천억원(2000년 예산편성 기준)

〈참고〉 과거 상반기 수지 추이

(단위 : 억원, %)

	1996년 상반기	1997년 상반기	1998년 상반기	1999년 상반기	2000년 상반기
통합재정수지 (GDP대비율)	62,840 (1.5)	47,341 (1.0)	-23,974 (-0.5)	-59,651 (-1.2)	132,122 (2.5)

□ 보전재원

- 재정의 흑자는 자금 배정의 축소로 인하여 대부분 한국은행의 국고잔액 순증가와 기타 금융기관 및 민간에 대한 예탁증가로 나타남.
- 국고시재금의 경우 전월에 비하여 2조 4,516억원 증가하고, 작년 동기에 비하여는 7조 786억원 증가
- 2/4분기까지의 국채발행은 전월에 비하여 1조 821억원 증가하고, 작년 동기에 비하여는 2조 7,841억원 감소

〈2000년 상반기 통합재정수지〉

(단위 : 십억원)

	2000.5월	2000.6월
A. 수입 (II + VI)	61,468	70,716
II. 경상수입 (III + IV + V)	60,788	70,461
III. 국 세 수 입	44,067	50,539
1. 소득세 및 법인세	16,205	18,236
2. 재산세	2,292	2,619
3. 재화 및 용역세(부가가치세 포함)	18,990	21,267
4. 관세	2,367	2,899
5. 기타	4,213	5,518
IV. 사회보장기여금	7,292	8,127
V. 세외수입	9,913	11,795
VI. 자본수입	196	255
B. 지출 및 순융자(II + V)	51,565	57,504
II. 지 출(III + IV)	44,330	48,959
III. 경상지출	36,887	39,275
1. 재화 및 용역	11,600	12,078
2. 이자지급	2,127	3,253
국내	1,730	2,738
해외	397	515
3. 보조금 및 경상이전	22,875	23,655
보조금	902	937
지방정부 경상이전	11,968	12,293
비영리기구 경상이전	5,080	5,303
가계 경상이전	4,710	4,902
해외경상이전	215	220
4. 비금융공기업 경상지출	285	289
IV. 자본지출	7,443	9,684
1. 고정자산 취득	3,190	4,189
2. 재고자산 매입	60	60
3. 토지및무형자산매입	396	603
4. 비금융공기업 자본지출	459	479
5. 자본이전	3,338	4,353
V. 순융자	7,235	8,545
통합재정수지(A-B)	9,903	13,212
보전재원	-9,903	-13,212
1. 국 내	-9,686	-12,967
- 한국은행	924	-256
- 국 채	5,234	6,316
- 국고시제	-8,346	-10,798
- 기 타	-7,498	-8,229
2. 해 외	-217	-245
GDP 대비	1.9	2.5

* 잠정치임



신용카드 및 인터넷 등에 의한 국세전자납부 전면실시

※ 이 자료는 국세청 징세과에서 2000년 8월 30일에 발표한
「신용카드 및 인터넷 등에 의한 국세전자납부 전면실시」의 전문입니다.

I. 신용카드 및 인터넷 등 전자납부의 개요

1. 그간의 추진경위

- 최근 상거래에 있어 신용 및 전자거래가 급증하고 있어 세금납부에 있어서도 이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여론 확산
- 국세청도 거래투명성 확보 및 세원관리를 위해 신용카드 사용을 권장하여 왔음(신용카드영수증 복권제도 시행 등).
- 이에 따라, 신용카드(Card Loan)에 의한 납부와 인터넷·전화(ARS)·자동입출금기(ATM) 등의 전자납부수단에 의한 세금납부제도 도입을 적극 추진하게 되었음.
- 2000년 7월 3일 13개 금융기관(은행 9, 카드사 4)이 참여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시범실시를 하였으며,
- 2000년 9월 1일 전 금융기관(시범실시 13 + 추가참여 13)이 참여하는 전면실시를 앞두고 있음.

현 행	카드사용 일반화	개 선
• 수납의 수동처리 • 납부장소 제약 ☞ 은행, 우체국, 세무서 • 납부자금원 한정 ☞ 현금납부(잔고)	전자상거래 활성화 납부수단 다양화 요구	• 납부수단 다양화 ☞ 전자납부 (인터넷, ARS, ATM) • 납부자금원 확대 ☞ 현금 + 카드론(대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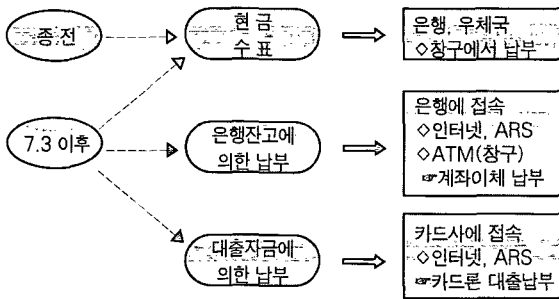
2. 주요내용

- 신용카드(카드론)에 의하여도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함.
- 종전에는 현금 및 수표로만 세금을 납부할 수 있었으나,
- 새 제도 시행으로 신용카드의 카드론이나 은행대출금 등 자금을 융통하여 납부할 수 있게 됨(신용카드 발급 : 약 4,000만매).
- 인터넷, 전화(ARS) 등을 이용하여 전자납부를 할 수 있도록 함.

○ 종전에는 은행·우체국의 수납창구에서만 납부할 수 있었으나,

○ 카드사·은행에 설치된 「국세납부 중계서버」에 접속함으로써 인터넷, 전화(ARS),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등에 의하여 어디에서든지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음.

㉠ 세금납부경로



II. 시범실시 및 전면 실시 내용

1. 시범 실시(2000.7.3~8.31) 현황

□ 시범 실시 참여 금융기관 (세부내용 다음 표 참조)

○ 2000년 7월 3일부터 시행된 시범 실시에는 13개 금융기관
(은행 9, 카드사 4)이 참여

- 은행 : 조흥, 외환, 서울, 하나, 기업, 한빛, 한미, 주택, 신한
- 카드사 : 외환, 삼성, LG, BC

○ 각 금융기관은 국세청이 제공한 표준입력모델에 따라 중앙
전산시설에 국세납부중계서버를 구축함으로써 국세를 수
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완비

- 인터넷 : 시범 실시 참여 13개 금융기관 모두 설치
- ARS : 각 금융기관의 전산 사정에 따라 9개 금융기관 설치
(은행 6, 카드사 3)

- ATM : 조흥은행 본점 영업부(1대) 설치

□ 시범 실시 결과

○ 시범 실시는 국세납부시스템의 구축과 시스템의 안정화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였음.

○ 시험 운용 결과 국세납부프로그램이나 납부전산시스템은
극히 정상적으로 작동함으로써, 제도의 도입 및 시스템의
안정화 등 초기 단계의 작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음이
입증됨.

- 국세 수납내역(EDI)은 한국은행을 거쳐 국세통합전산망
(TIS)으로 무리없이 취합되었으며,

- 기타 기술적인 오류나 불편은 전혀 없었음.

2. 전면 실시(2000.9.1) 내용

□ 전면 실시 참여 금융기관 (세부내용 다음 표 참조)

○ 시범 실시에 참여한 13개(2000.7.3 개시) 금융기관과 추가
로 참여한 13개(2000.9.1 개시) 금융기관 등 모두 26개
금융기관이 전면 실시 참여

- 은행 : 국민, 농협, 제일, 평화, 수협
(지방은행) 전북, 광주, 대구, 부산, 경남, 제주

- 카드사 : 국민, 다이너스

⇒ 일반거래 고객의 숫자가 극히 적은 산업은행 및 동양카드
를 제외한 전 금융기관(26개)이 참여



○ 납부요령이나 기술적인 문제 등 모든 사항은 시범실시의
경우와 동일함.

- ATM : 조흥은행 본지점 전점포 설치(총 4,544대)
광주은행 본지점 전점포 설치(총 629대)

○ 프로그램 설치 현황

◇ ATM의 경우 조흥은행 및 광주은행의 본지점에 설치된 모
든 ATM(CD기 포함)에서 납부가능함.

- 인터넷 : 추가참여 13개 금융기관 모두 설치
- ARS : 5개 금융기관 설치(은행 5)

〈전면 실시 참여 금융기관 현황〉

시범실시 (2000. 7. 3 개시)		추가참여 (2000. 9. 1 개시)	
금융기관명	인터넷사이트 주소 (ARS 전화번호)	금융기관명	인터넷사이트 주소 (ARS 전화번호)
조흥은행	www.chb.co.kr (1588 - 4114)	국민은행	www.kookminbank.com (1588 - 1616)
외환은행	www.keb.co.kr (1544 - 3000)	농협중앙회	www.nonghyup.com (1588 - 2100)
서울은행	www.seoulbank.co.kr (1588 - 3651)	제일은행	www.kfb.co.kr (1588 - 1599)
주택은행	www.hncbworld.com	평화은행	www.pbk.co.kr
기업은행	www.kiupbank.co.kr (1588 - 2588)	수협중앙회	www.suhyup.co.kr (1588 - 1515)
한빛은행	www.hanvitbank.co.kr (1588 - 5000)	전북은행	www.jeonbukbank.co.kr
한미은행	www.goodbank.com (1588 - 7000)	광주은행	www.kjbank.com (1544 - 7890)
하나은행	www.hanaib.com (1588 - 1111)	대구은행	www.daegubank.co.kr
신한은행	www.shinhan.com (1544 - 8000)	부산은행	www.pusanbank.co.kr
-	-	경남은행	knb.banktown.com
-	-	제주은행	www.chejubank.co.kr
외환카드	www.kebcard.co.kr (1588 - 9500)	국민카드	www.kookmincard.co.kr
삼성카드	www.samsungcard.co.kr (1588 - 7654)	다이너스카드	www.dinerscard.co.kr
LG카드	www.lgcapital.com (1544 - 1133)	-	-
BC카드	www.bccard.co.kr	-	-

국세체납(결손)자료 신용정보기관 제공제도 시행효과

※ 이 자료는 국세청 징세과에서 2000년 8월 2일에 발표한
「국세체납(결손)자료 신용정보기관 제공제도 시행효과」의 전문입니다.

I. 추진경과

- 국세청에서는 성실납세풍토를 조성하고 신용사회 정착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세징수법 제7조의 2 및 신용정보이용 및보호에관한법을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인 전국은행연합회의 요청에 따라 지난 7월 1일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국세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하였음.
- 전국은행연합회에 제공된 자료는 7월 3일부터 동 연합회가 운영하는 신용정보공동전산망에 주의거래처로 등록되어 금융기관 등의 이용기관들이 다양하게 업무에 활용하고 있음.

◆ 자료제공대상

- 자료제공기준일 현재 1천만원 이상의 체납자 중
 -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거나
 - 1년에 3회 이상 체납한 자
- 자료제공기준일 현재 결손처분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주: 자료가 제공되는 결손처분액은 1996년 12월 30일 이후 인별누적금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임.

II. 자료제공대상 출력 및 제공현황

(단위 : 명)

구 분	출 령	제외·연기	제 공
□ 1천만원 이상 체납자	86,720	23,100	63,620
- 1년경과 체납	70,070	15,431	54,639
- 1년 3회 이상 체납	16,650	7,669	8,981
□ 5백만원 이상 결손자	298,996	15,302	283,694
합 계	385,716	38,402	347,314
순 인 원	292,187	29,549	262,638

주: 동일인에 대하여 체납과 결손이 구분되어 제공되고, 세무서별로도 구분되어 제공됨.

- 순인원 29만 2,187명의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제공대상으로 출력되어
- 2만 9,549명이 자료제공 제외 또는 연기처리되고 26만 2,638명의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최종적으로 제공되어 등록되었음.
- 체납자와 결손자의 자료제공비율은 18 : 82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바

○ 이는 결손처분자료제공기준이 금액으로는 체납의 절반수준인 500만원이고, 체납에는 규정된 발생의 시기 및 횟수에 대한 제한이 결손에는 없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Ⅲ. 자료제공에 대한 각 분야의 반응

□ 세정모니터 설문조사 결과

○ 5월 23일~6월 19일간 실시한 세정모니터 요원의 답변내용을 분석한 결과는
-90.4%가 체납자료의 신용정보기관 제공에 대하여 「잘했다」는 견해를 보였으며, 91.7%는 「체납세금 납부촉진에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하는 등 전반적으로 바람직한 제도로 인식하고 있음.

□ 일반납세자 여론동향

○ 불금생활자 등 체납하지 않는 성실납세자와의 형평 제고 및 조세정의 구현 차원에서 체납자료의 신용정보기관 제공을 통한 금융제재는 바람직하고
-공적자료인 체납자료의 신용정보자료로의 활용으로 신용사회 정착에 크게 기여할 것이므로 자료제공기준금액을 하향조정하거나 체납자 전체자료를 제공하여 체납자와 거래하는 상대방을 보호하여야 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음.

□ 자료제공대상 체납자들의 반응

○ 자료제공대상 체납자와 결손자들은 체납(결손)자체는 국민으로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이므로 잘못된 것이나

- 본인의 체납은 불가피한 경우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음.

Ⅳ. 체납(결손)자료의 신용정보기관 제공효과

□ 체납세금 징수효과

(단위 : 명, 억원, %)

		합 계	1천만원 이상 체납		500만원이상 결 손
			1년 경과	3회 이상	
합 계	인 원	23,426	11,051	6,478	5,897
	금 액	1,955 (100%)	858 (43.9)	631 (32.3)	466 (23.8)
부가가치세		1,166	491	473	202
종합소득세		267	129	69	69
양도소득세		223	93	7	123
상속·증여세		120	87	6	27
원 천 세		67	17	20	30
법 인 세		58	25	21	12
기 타		54	16	35	3

주: 징수금액 1,955억원 중 1,734억원은 자료 제공 예고(5.26) 후부터 6월 30일까지 자료 제공 전 납부실적이며, 221억원은 자료 제공 후 7월 11일까지의 납부실적임.

○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의 신용정보기관 제공으로 인한 체납세금의 징수효과는 체납(결손)자 2만 3,426명으로부터 1,955억원을 징수하여
-체납(결손)자 1인당 평균징수금액은 835만원을 기록하고 있음.

○ 신용정보기관(전국은행연합회)에 제공되는 체납(결손)이 대부분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체납으로 현금징수가 어려운 체납임을 감안할 때
-체납(결손)자료의 신용정보기관 제공에 따른 체납세금의 징수효과는 상당히 효과적임 것으로 보여짐.

○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된 고질적인 체납자 1만 1,051명으로부터 858억원을 징수하여 전체징수금액의 43.9%를 차지하고 있고

-연간 3회 이상 체납한 상습적인 체납자 6,478명으로부터 전체징수금액의 32.3%인 631억원을 징수하였음.

-특히, 공부상 무재산 또는 폐업자들이 대부분으로 세수 일실로 연결될 가능성이 많은 500만원 이상의 결손자로부터 징수한 금액도 466억원을 차지하여 전체징수금액의 23.8%를 차지하고 있음.

○ 세목별로는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순으로 많은 세금이 징수되었으며

-부가가치세가 1,166억원이 징수되어 전체 납부세액의 59.6% 수준을 차지하고 있으며

-양도소득세는 전체 징수세액 223억원의 55.2% 수준인 123억원이 결손처분자로부터 징수되어 비사업자에게도 금융제재는 체납세금 납부유도에 효과적인 수단임을 시사하고 있음.

□ 명의위장사업자 축소효과

○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등 명의위장사업자의 체납 또는 결손 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되어 명의대여자가 금융제재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됨에 따라

-실제사업자와 담합을 통한 명의 대여 등이 축소되어 명의위장사업자를 축소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임.

• 체납자료 신용정보기관 제공 후 일선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 기존의 명의대여자의 고충이 상당수 접수되어 실제 사업자를 밝히는 조사가 진행중에 있음.

□ 신규 체납 발생 억제효과

○ 체납자료의 신용정보기관 제공대상자 중 체납세금의 납부 등으로 자료 제공이 제외 또는 연기된 체납자들은 물론

-체납이 없는 납세자들도 향후 체납 발생시 금융기관들의 제재를 예상하게 되어 신규 체납 발생 억제에는 효과적인 것임.

□ 세무공무원의 과세 및 결손절차 준수효과

○ 체납자료의 신용정보기관 제공으로 과세 및 결손처리에 대한 정당성이 사후적으로 검증되어

-국세청 직원들도 세법 등의 관련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풍토조성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예상됨.

V. 향후 체납(결손)자료 신용정보기관 제공업무 추진

□ 금년중에도 두차례(3/4·4/4분기)의 체납(결손)자료의 신용정보기관 제공업무가 예정되어 있는바 체납세금의 납부 독려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외환위기로 불가피하게 부도·폐업된 사업자 중 분납 등성의 있는 납부 노력을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관할 세무서장이 연기 등의 유예조치를 신축적으로 운용하도록 할 예정임.

○ 아울러, 체납(결손)자들이 체납세금 납부 등의 원인으로 제공대상자료에 해당되지 않게 될 경우

-자료가 제공되어 불량신용정보로 등록된 내용이 실시간(real time)에 삭제될 수 있도록 국세청과 전국은행연합회와의 전산체계를 개선하여 나감 예정임.

1999년도 기금운용 평가결과

※ 이 자료는 기획예산처 예산관리국 관리총괄과에서 2000년 8월 29일에 발표한
「1999년도 기금운용 평가결과」의 요약입니다.

I. 주요내용

□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한 재정개혁의 일환으로 작년부터 방만한 운용 등 그동안 지적되어왔던 기금운용의 문제점에 대해 획기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 왔음.

□ 특히, 금년에는 1961년 기금이 도입된 지 40년 만에 최초로 62개 전 기금(공공기금 42개, 기타기금 20개)에 대하여 운용실태를 평가함으로써

○ 기금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 적자재정 해소 및 국민의 부담 경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 금번 평가는 기금의 공공성을 전제로 하되 기금운용에 있어 수익성과 전문성 개념 등을 도입함으로써 향후 시장경제원리에 기초한 정부의 정책 수립 및 집행에 기여하고자 하였음.

○ 지난해는 구조개혁의 일환으로 기금의 통폐합(△20개), 기

타기금의 공공기금화(10개) 등 기금정비에 주력하였고, 금년에는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운용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역점을 두었음.

□ 또한, 62개 전 기금에 대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상의 잘된 점 뿐 아니라 미흡한 점도 철저히 조사하였고, 그 결과는 국무회의의 보고를 거쳐 국회에 제출하게 됨으로써 정부 내부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공개됨.

□ 금년도 기금운용평가 작업은 지난 2월부터 8월까지 추진되어 왔으며

○ 평가의 공정성·객관성·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민단체 대표를 포함한 민간전문가 32명으로 구성된 「기금운용평가단」이 기금운용의 실태를 평가함.

○ 금년도는 평가의 초년도인 점을 감안하여 종합부문·사업운영부문·관리조직부문·자산관리부문 등 4개 부문으로 나누어 실사 및 서면조사를 통해 실시

□ 1999년도 기금운용 평가결과를 종합적으로 보면

○ 많은 기금이 그간 지적되어 왔던 문제점에 대해 제도개선을 추진하여 운영의 효율성·투명성이 전반적으로 향상된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일부 기금은 전문성 제고노력·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한 정책결정·효율적인 자산운용 등의 측면에서 상당한 수준의 개선노력이 인정됨.

○ 그러나, 이러한 제도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기금운용의 효율성·투명성·전문성 등의 측면에서 다수의 문제점이 제기되어 향후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요구됨.

□ 평가결과 잘된 점

○ 지난해의 기금관리기본법 개정 및 기금정비는 기금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 획기적으로 기여함.

○ 부실채권정리기금, 고용보험기금, 수출보험기금 등은 사업운영의 효과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평가됨.

○ 기술신용보증기금, 국민연금기금 등은 전문성 제고를 위한 상당한 노력 및 성과를 보임.

○ 공무원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등은 수익성이 저조한 사업을 민간에 위탁하는 등의 구조조정 노력이 높이 평가됨.

○ 농지관리기금, 국민연금기금 등은 기금운용에 있어 다방면의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의사결정의 투명성 및

대표성을 제고한 것으로 평가됨.

○ 공무원연금기금, 국민연금기금 등은 자산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평가됨.

□ 평가결과 미흡한 점

○ 대부분의 기금에서 전문성이 미흡하고, 경영개선을 위한 인센티브가 부족함.

○ 다수의 기금들이 동일한 사업영역을 지원대상으로 설정하고 있으나 기금간 횡적 업무조정이 미흡하여 수혜자가 중복됨.

○ 일부 기금의 경우 기금 본연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수익성도 크지 않은 부대사업을 운영하여 기금재정에 손실을 초래함.

○ 대다수의 기금들이 여유자금을 명확한 운용정책 없이 과도하게 단기로 운용하여 수익률 저하를 초래함.

○ 수익자 부담원칙 적용의 미흡, 사업수요와 연계되지 않는 재원조달 등으로 인해 재원의 합목적성 제고 노력이 미흡함.

○ 기금 사업의 예산으로의 전환, 기금 통폐합, 기타기금의 공공기금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기금운용 평가결과,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단기 및 중기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개선 여부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것임.



○ 합리적인 자산운용지침의 마련, 수혜자정보의 공개 등 단
기과제는 개별 기금관리주체가 자율적으로 금년 말까지 실
시하고,

○ 기타기금의 공공기금으로의 전환 등 중기과제는 관계부처
및 기관간 협의,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 등을 통하여 단계적
으로 추진함.

〈첨부〉

1999년도 기금운용 평가결과 잘된 점과 미흡한 점(요약)

사 례	기 금
【종합 부문】 · 지난해의 기금정비는 기금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인프라 구축에 기여	
【사업운영 부문】 · 1999년도 부실채권정리에 따른 매각이익이 2조원에 달하여 공적자금회수를 효율적으로 추진 · 1998년 이후 84%의 수출지원 실적 증가를 시현하여 외환위기 극복에 일조 · 적용·징수업무를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하여 피보험자의 편의와 업무의 생산성을 제고	부실채권정리기금 수출보험기금 고용보험기금
· 수익성이 저조한 부대사업을 민간 위탁하는 등 구조조정을 추진	공무원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근로복지진흥기금

사 례	기 금
【관리조직 부문】 · 기술평가센터 건립 등을 통해 전문성을 제고하여 기술평가실적이 매년 50% 이상 신장 · 계약직 펀드매니저 등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자산운용수익률이 향상 · 수혜자 대표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여 투명성과 대표성을 제고	기술신용보증기금 국민연금기금 농지관리기금, 국민연금기금
【자산관리 부문】 · 일시 부족자금은 콜자금수준으로 조달 운용하고 여유자금은 중장기예금으로 운용하여 자산운용의 수익률을 제고 · 기금운용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월보수의 1,200%까지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	공무원연금기금 국민연금기금

□ 미흡한 점

사 례	기 금
【사업운영 부문】 • 합리적·구체적인 사업의 타당성 검토 및 효과성 분석 없이 단순 일회성 사업을 수행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기금, 국민건강증진기금 등
• 호텔·회관사업 등 수익성이 저조한 부대사업을 운영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근로복지진흥기금 등
• 전략적 개념 없이 형평성 원리에 입각하여 재원을 배분	문예진흥기금, 여성발전기금 등
• 동일한 사업영역을 지원대상으로 설정하고 있으나 일관된 정책방향이나 지원전략이 부재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 정보화촉진기금, 산업기반기금 등
【관리조직 부문】 • 기금운용심의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며 구성원의 대표성 및 전문성이 결여	대외경제협력기금, 축산발전기금 등
• 의사결정 과정 등에 대한 정보가 폐쇄되어 있고 정보공개를 위한 제도적 여건도 미비	인삼산업진흥기금,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등

사 례	기 금
【관리조직 부문(계속)】 • 하위직급 위주의 구조조정이 이루어져 조직운영의 비효율을 초래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기금 등
• 기금관리조직의 전문성 결여	고용보험기금, 과학재단기금 등
【자산관리 부문】 • 과도하게 많은 운용자금을 단기로 운용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 국제교류기금 등
• 특정금융기관에의 배타적 또는 우선배분으로 운용수익률 회생이 우려	농안기금, 종자기금, 정보화촉진기금 등
• 운용성과에 대한 평가 및 보상시스템이 미흡	대부분의 기금
• 적절한 비용부담 없이 정부조직 및 예산을 사용하여 사업을 운영	우체국보험기금
• 복권 등에 의존하는 자원조달방식은 예산제약을 극복하는 장점이 있으나 소득 역진적이라는 문제가 있음	과학기술진흥기금, 국민주택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등

정

책

호

금

〈참고 : 부처별 평가 대상 기금〉

소관부처	공공기금	기타기금
재정경제부(11)	공공자금관리기금, 국민투자기금, 국제관리기금, 대외경제협력기금, 외국환평형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신용보증기금,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기금
통일부(1)	남북협력기금	
외교통상부(1)		국제교류기금
법무부(1)		법률구조기금
국방부(3)	군인연금기금, 방위산업육성기금, 군인복지기금	
행정자치부(2)	공무원연금기금	새마을금고안전기금,
교육부(2)	사립학교교원연금기금, 사학진흥기금	
과학기술부(4)	과학기술진흥기금, 원자력연구개발기금	한국과학재단기금, 과학기술문화기금
문화관광부(5)	청소년육성기금, 관광진흥개발기금, 문화산업진흥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문예진흥기금
농림부(6)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농지관리기금, 종자기금, 양곡증권정리기금, 축산발전기금	인삼산업진흥기금
산업자원부(5)	산업기반기금, 특정물질사용합리화기금, 염 안정기금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기금, 수출보험기금
정보통신부(2)	정보화촉진기금	체신보험기금
보건복지부(2)	국민연금기금, 국민건강증진기금	
환경부(1)	한강수계관리기금	
노동부(6)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예방기금, 장애인고용촉진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 임금채권보장기금, 근로복지진흥기금	
건설교통부(1)	국민주택기금	
여성특별위(1)	여성발전기금	
금융감독위(1)		부실채권정리기금
기획예산처(1)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국가보훈처(3)	보훈기금,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참전군인등지원기금	
경찰청(1)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기금	
중소기업청(2)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총 62개	42개	20개

〈개선 방안〉

1. 사업운영 부문

- 사업운영의 적정성 제고
 - 수혜자 정보를 공개하여 사업 대상자 선정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수혜자 중복의 폐해를 근절
 - 성과에 대한 적절한 평가 및 보상체계를 확립하여 기금의 설치목적에 달성하기 위한 동기를 부여
- 사업선정의 타당성 제고
 - 기금의 핵심사업을 중심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부대사업은 규모 축소
 - 기금으로서 반드시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업에 주력하도록 운용계획을 수립

2. 관리조직 부문

- 기금운용의 투명성 제고
 - 기금운용심의회에 수혜자 등 이해관계자(stakeholders)의 참여를 확대하여 대표성을 제고하고, 의사결정과정을 투명하게 공개
 - 유사기간 「기금운용자협의회」를 구성하여 사업중복을 최소화하고 기금사업간의 시너지효과를 제고
 - 기금운용자간에 정보 교류 및 운영방식의 교류 등을 통해

미진한 투명성을 보완

- 기금운용의 전문성 제고
 - 성과금 계약제에 의한 외부전문인력 채용제를 도입, 다만 소규모 기금은 필요에 따라 자체 판단
 - 자산운용의 아웃소싱을 확대
 - 단기적으로는 외부기관에 위탁 교육을 실시하여 운용담당자의 전문성을 함양

3. 자산관리 부문

- 자산운용정책의 적정성 제고
 - 자산부채종합관리(ALM)에 기초한 자산운용정책 명문화 및 의무화
 - 자산운용 의사결정 체계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자산운용지침 마련 의무화
 - 위탁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명확한 위탁계약 조건하에 경쟁입찰을 실시, 위탁운용을 허용
 - 일반적인 자산운용 아웃소싱에 준하여 목표 수익률, 만기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계약
- 자산운용의 효율성 제고
 -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활용할 수 있는 투자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산운용정책, 목표자산배분비율, 성과평가 및 보상체계 등을 실질적으로 심의·의결

○ 자산운용지침에 여유자금의 단기 운용을 지양하도록 명문화
- 이행여부는 투자심의위원회에서 확인

○ 효율적인 자산배분을 위해 현행 법규정이 투자대상 자산을 제한하는 경우 합리적인 수준으로 법규정을 개정

□ 투자 풀(investment pool) 제도 도입 검토

○ 기금자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선진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투자 풀 제도를 도입

- 적립성 기금의 여유자금 등 비교적 장기자금을 대상으로 하는 풀과 사업 대기성 자금과 단기자금을 대상으로 하는 풀을 구분하여 설치

- 사업성 대기 자금 위탁의 활성화를 위해 유동성 부족분에 대해서는 투자 풀에서 내부적으로 저리로 융자

○ 투자 풀을 운용할 전문인력을 충원하고 성과평가에 따라 보수를 연동하여 효율적인 운용조직을 구축

- 정부 조직하에서 전문인력 조직을 설치하는 방안과 민간의 자산운용전문회사에 경쟁적으로 위탁운용하는 방안을 검토

〈투자 풀(investment pool)〉

투자 풀이란 체계적인 자산운용시스템을 갖추기에는 영세한 기금들의 자금을 모아서 위탁·운영하기 위해 체계적인 자산운용시스템을 갖추고 전문인력에 의해 운용되는 조직

□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제도의 단계적 개선

○ 자금중개기능 효율화를 위해 공공자금관리기금이 다양한 만기의 국고채권을 발행하여 개별기금이 인수하게 하도록 단계적으로 제도를 개선

- 국민연금기금의 의무예탁 폐지(2001년) 및 국채관리기금과 공자기금의 통합(2000년 4월)으로 국고채권 발행을 통해 타기금의 여유자금을 흡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이미 구비

- 2001년부터 기금은 예금보험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신용위험을 줄이고 안정적으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해서도 기금의 국고채 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4. 기금 정비의 지속적 추진

◇ 기금의 예산으로의 전환, 기금 통폐합, 기타 기금의 공공기금화를 단계적으로 추진

□ 기금의 예산으로의 단계적 전환 검토

○ 대부분의 사업성 기금은 기금으로 유지할 불가피성이 미약하므로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로의 전환 검토

- 기금으로 유지되는 경우에는 기금목표의 효율적 달성을 위해 자율성을 최대한 확보해 주되 기금의 목적을 벗어난 자의적인 운용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여 운용

기금 형태 유지의 전제 조건

- 명확한 정책목표가 있어야 하고 이의 달성을 위해 필요한 목적사업이 한정적으로 규정된 경우
- 사업에 필요한 재원조달이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 확보 가능한 경우
- 타기금 또는 예산사업과의 중복성이 없는 경우
- 지속적인 예산 출연이나 재특용자 없이도 기금의 재정 자립이 확보 가능한 경우

□ 유사기금의 단계적 통폐합

○ 제조업, 중소기업, 첨단산업, 문화산업 등 산업구조의 선진화를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기금들의 유사기능을 재조정하고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 신용보증기능을 수행하는 기금들도 전문적인 인력들을 상호보완적으로 통합·활용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 부처별로 핵심사업에 주력할 수 있도록 기금 및 특별회계의 유사사업들을 검토하여 한 개의 기금이나 특별회계로 통합

-부처 내에서의 사업간 경쟁을 통해 부처별 정책목표와 달성 기여도의 우선순위에 의해 사업계획이 수립되도록 유도

□ 기타기금의 공공기금으로의 단계적 전환

○ 기금운용의 적합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모든 기타기금을 공공기금으로 전환하여 국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범위를 확대하여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제고

-기타 기금도 공공성을 전제로 하고 있어 공공기금과의 차별성이 없음.

-기타 기금 중 조성 재원의 대부분이 정부출연금 또는 준조세인 기금들과 국가경제에 대한 파급효과가 막대하여 조속한 공공기금화가 필요한 기금부터 단계적으로 전환

□ 재원 조성방법의 개선

○ 모든 기금의 재원조달 방안을 수익자부담원칙에 충실한 방

향으로 재검토

-수혜자에게 부과하는 법정부담금을 자산부채종합관리(ALM)에 의한 재정 예측에 의거하여 재조정

5. 추진방안

○ 단기 과제는 개별 기금 관리주체가 자율적으로 금년 말까지 실시

○ 중기 과제는 관계부처 및 기관 간 협의,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 등을 통하여 단계적으로 추진



〈개선방안 종합〉

부 분	개 선 방 안	단기	중기
1. 사업운영부문	○ 사업선정의 타당성 제고 • 기금사업의 예산으로의 전환 • 핵심사업 위주의 운영	○ ○	○
	○ 사업운영의 적정성 제고 • 수혜자 정보의 공개 • 성과평가 및 보상체계의 확립	○	○
2. 관리조직부문	○ 기금운용의 투명성 제고 • 수혜자 등 이해관계자의 참여 확대 • 기금운용자 협의회 구성	○ ○	
	○ 기금운용의 전문성 제고 • 외부 전문인력 채용 • 자산운용의 아웃소싱 확대 • 운영 담당자에 대한 위탁교육 실시	○ ○ ○ ○	○ ○ ○ ○
3. 자산운용부문	○ 자산운용정책의 적정성 제고 • 자산운용정책의 명문화 • 합리적인 자산운용지침 마련 • 합리적인 위탁운용계약 체결	○ ○ ○	○
	○ 자산운용의 효율성 제고 •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투자심의위원회 운영 • 초단기 자산운용 지양 명문화 • 투자 대상 자산의 합리적 확대	○ ○ ○	
	○ 투자 풀의 조성	○	○
	○ 공자기금 예탁제도의 개선		○
4. 기금정비	○ 기금의 예산으로의 단계적 전환		○
	○ 유사기금의 단계적 통폐합		○
	○ 기타기금의 공공기금으로의 단계적 전환		○
	○ 재원조성 방법의 개선		○

2000년도 대형투자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결과

※ 이 자료는 기획예산처 예산관리국 투자관리과에서 2000년 8월 7일에 발표한
「2000년도 대형투자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결과」의 전문입니다.

I. 주요내용

□ 기획예산처는 금년도 각 부처가 요구한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29개 대규모 투자사업(추정 총사업비: 13조 6,163억원)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였음.

□ 예비타당성 조사는 대규모 투자사업의 우선순위에 입각한 신중한 착수를 도모하기 위해 1999년부터 도입된 제도로써

○ 금년도 조사는 지난 2월부터 한국개발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 민간엔지니어링회사,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경제성 분석, 지역경제파급효과 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함으로써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음.

□ 29개 투자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 경제적 타당성이 높아 추진이 필요한 사업은 제주공항 확장, 조치원-대구 전철화 등 14개 사업(추정 총사업비: 5조 7,550억원)이고,

○ 경제성이 낮거나 사업의 투자우선순위가 낮아 향후 수요 증가 등 여건 변화를 보아가며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은 광주-팔당간 국도대체 우회도로, 울산-포항간 동해 남부선 복선 전철화 등 15개 사업(추정 총사업비: 7조 8,613억원)임.

경제적 타당성이 높아 추진이 필요한 사업

군장수출자유지역 조성(1,270억원), 제주공항 확장(1,697억원), 광양항 3단계 가호안(3,992억원), 조치원-대구 전철화(5,491억원), 제천-도담 복선 전철화(2,975억원), 호남선 전철화(13,250억원), 수도권급시설 연계운영(673억원), 군장산업단지 장항지구 지원도로(1,466억원), 동순천-여수 철도개량(5,466억원), 울산-포항간 고속도로(10,300억원), 군산 비응도항(838억원), 사기정-암사동 광역도로(4,059억원), 부산항 부정기여객 및 해경부두(819억원), 다대포항(5,254억원)

주: ()는 추정총사업비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는 사업

화원-목포 국도 확장(721억원), 광주-팔당간 국도대체 우회도로(2,823억원), 울산-포항간 동해남부선 복선 전철화(20,594억원), 상주-안동간 고속도로(9,779억원), 송도-시화 광역도로(4,201억원), 목포 국도대체우회도로(2,483억원), 삼랑진-마산 복선 전철화(7,591억원), 강경 우회도로(587억원), 영천-대구 국도 확장(2,577억원), 재활용종합단지 조성(937억원), 서해안 산업철도(7,774억원), 안동-법전 국도 확장(5,368억원), 감천항 정비사업(1,042억원), UN기념공원 조성(1,168억원), 동부산 Green City 조성(10,968억원)

- 기획예산처는 이번 예비타당성 조사결과를 토대로
-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14개 사업에 대해서는 2001년도 예산에 기본설계비 등 사업 추진을 위한 필요요를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 반영할 계획이며
-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15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시기를 연기하여 추후 여건 변동 등을 감안하여 검토할 계획임.
- 이와 같이 예비타당성조사를 사전에 실시함으로써

- 불요불급한 대규모 투자 사업의 착수를 신중하게 할 수 있게 되어 예산의 낭비를 막고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크게 높일 수 있게 되었고
- 앞으로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대형투자사업을 무리하게 요구하는 사례도 현저하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 기획예산처는 예비타당성 조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다 높이기 위하여 관련 민간전문가의 참여를 더욱 확대하고 세부 조사지침 등을 지속적으로 개발·보완해 나갈 계획임.

2000년도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단위 : 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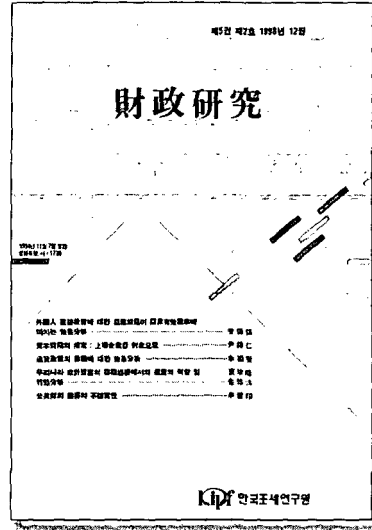
구 분 (사 업 명)	추 정 총사업비	B/C비율	2001년 예산 요구	비 고
〈 추진이 필요한 사업 〉				
○ 투자우선순위가 높은 사업(6건)				
- 군장수출자유지역조성사업	1,270	17.94	349	
- 제주공항 확장	1,697	3.65	20	
- 광양항 3단계 가호안	3,992	1.87	55	
- 조치원-대구 전철화	5,491	1.84	97	
- 제천-도담 복선 전철화	2,975	1.31	42	
- 호남선 전철화	13,250	1.30	655	
○ 사업규모를 축소하거나 단계적으로 추진할 사업(4건)				
- 수도공급시설 연계운영	673	2.29	3	금강-전주권 사업 우선 시행
- 군장산업단지(장항)지원도로	1,466	1.35	총액	2개 노선 중 2호선 우선 시행
- 동순천-여수 철도개량	5,466	1.13	9	동순천-여천 구간 시행
- 울산-포항간 고속도로	10,300	1.09	20	울산-남포항 구간 시행
○ 일부 민자 유치가 필요한 사업(4건)				
- 군산 비응도항	838	3.09	13	399(물양장)
- 사가정-암사동 광역도로	4,059	2.68	총액	1,083(터널구간)
- 부산 부정기 여객 및 해경부두	819	1.99	10	415(여객부두)
- 다대포항	5,254	1.10	32	839(철재 및 수산물 부두)
소 계 (14 건)	57,550		1,305	

구 분 (사 업 명)	추 정 총사업비	B/C비율	2001년 예산 요구	비 고
〈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사업 〉				
○ 경제성은 있으나 사업추진시기 재검토가 필요한 사업(3건)				
- 화원-옥포 국도 확장	721	1.81	총액	국도의 우선순위가 낮음
- 광주-팔당 국도대체 우회도로	2,823	1.69	총액	환경영향평가후 판단
- 울산-포항간 동해남부선 복선 전철화	20,594	1.53	17	경부고속철도 완공과 연계 검토
○ 경제적 타당성이 낮아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업(11건)				
- 상주-안동간 고속도로	9,779	0.86	-	
- 송도-시화 광역도로	4,201	0.82	총액	
- 목포 국도대체 우회도로	2,483	0.78	총액	
- 삼랑진-마산 복선 전철화	7,591	0.70	34	
- 김경 우회도로	587	0.69	총액	
- 영천-대구 국도 확장	2,577	0.69	총액	
- 재활용종합단지 조성	937	0.60	-	
- 서해안 산업철도	7,774	0.50	8	
- 안동-법전 국도 확장	5,368	0.40	총액	
- 감천항 정비사업	1,042	0.30	17	
- UN 기념공원 조성	1,168	0.09	95	
○ 경제성있는 규모로 축소한 후 민자로 추진해야 할 사업 (1건)				
- 동부산 Green City	10,968	0.65	61	
소 계 (15 건)	78,613		232	
총 계 (29 건)	136,163		1,537	

『재정연구』 원고모집 안내

전문 학술지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 가고 있습니다.

한국조세연구원에서는
대학 및 관련기관의 전문가들과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진간의
개방적·경쟁적인 교류를 통해
학문발전과 정책개발이
고양될 수 있다고 보고 외부전문가들의
기고를 지원해 왔습니다.
다음과 같이 관련 전문가 여러분들의
우수한 논문을 적극 유치하고자 하오니
많은 투고를 기대합니다.



1. 『재정연구』는 공공경제를 비롯한 경제학 관련 학술논문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2. 제출되는 논문에 대해서는 모든 전문 학술지가 요구하는 referee과정을 거치게 되며, 채택되는 원고에 대해서는 **전당 100만원**의 원고료를 지급합니다.
3. 『재정연구』에 투고하는 논문은 국문제목, 저자의 국문 이름, 국문초록(한글 400자 이내), 본문, 영문제목, 저자의 영문 이름 및 영문초록(영문 200단어 이내)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원고 출력본 3부를 파일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재정연구』는 연속간행물로서 원고는 특정 마감일 없이 **항시** 모집하고 있습니다.
5. 투고 및 편집에 관련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8-774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79-6 한국조세연구원
홍범교 박사(『재정연구』 편집위원장)

전 화: (02) 2186-2226
e-mail: hong@kipf.re.kr
팩 스: (02) 2186-2139

Kipf 한국조세연구원